

**연구보고 215 / 1990. 12.**

**농림수산 부문  
재정 현황과 개선방향**

설 광 언(부연구위원)

한 두 봉(책임연구원)

권 오 상(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빈

면

## 머리말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 협상이 진전됨에 따라 농수산물의 수입개방 압력이 가속되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 농업정책의 근간을 이루어 오던 각종 보조금의 감축과 가격지지정책의 재검토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한국의 농림수산업은 국제화의 경쟁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체제를 시급히 확립해야 할 단계에 와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맞는 농림수산 정책의 방향 정립과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와 재원의 효과적인 투입이 현안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농림수산 부문의 재정운용 현황이나 문제점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가 등한시되어 왔다.

이 연구는 정부예산과 각종 기금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하여 지출되어 오던 농림수산 관련 재정지출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정리하였다. 우리 나라의 농림수산 부문과 관련된 재정이 어떻게 운영되어 왔으며,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밝히고 앞으로 농림수산 관련 재정의 운영 방향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가를 제시하였다.

지난 10년간 농림수산부와 산하 관청의 예산내역 자료 및 각 局別 政策事業의 세부내용, 목적, 재원, 사업액에 관한 자료는 附表에 수록 하였는데, 이는 농업분야 연구자나 정책입안자들에게 좋은 참고자료가 되리라 믿는다.

1990. 12.

院長 許信行

빈

면

## 目 次

<b>第 1 章 序 論 .....</b>	<b>1</b>
<b>第 2 章 農林水產 財政의 概況과 問題點</b>	
1. 農林水產 財政의 概況 .....	2
2. 農林水產 財政의 問題點 .....	29
<b>第 3 章 UR 協商과 財政에 의한 農業補助金 減縮</b>	
1. 農業補助金의 細部 現況 .....	33
2. 國內補助 減縮의 推算 .....	37
<b>第 4 章 農林水產 財政의 運營方向</b>	
1. 與件 變化와 政策方向 .....	42
2. 政府 役割의 再定立 .....	43
3. 農林水產 財政運用의 改善方向 .....	44

## 표 목 차

### 제 2 장

표 2- 1	綜合財政收支의 包括範圍	3
표 2- 2	중앙정부 총재정규모	5
표 2- 3	농림수산 부문 총재정규모	5
표 2- 4	농림수산 부문 재정지출의 비중	5
표 2- 5	농림수산 부문 재정지출의 부처별 분류	6
표 2- 6	농림수산 부문 및 농어촌지원 예산	8
표 2- 7	타부처 소관 농어촌지원 예산	9
표 2- 8	농림수산부문 예산의 부처별 분류	10
표 2- 9	농림수산부 예산의 항목 분류	11
표 2-10	농림수산부 세출예산 분류	12
표 2-11	각연도 농촌진흥청 예산의 세항별 분류	13
표 2-12	각연도 수산청 예산의 세항별 분류	14
표 2-13	각연도 산림청 예산의 세항별 분류	15
표 2-14	최근 3년간 농림수산 부문 주요 예산지출 구성	16
표 2-15	1989년도 농림수산부 예산지출의 항별·목별 분류	18
표 2-16	농림수산부 예산 중 보조금 비중	20
표 2-17	중앙정부 재정투융자	24
표 2-18	농림수산 부문 재정투융자	25
표 2-19	농림수산 부문 재정투융자의 비중	26
표 2-20	농림수산 부문 재정투융자의 비율	26

표 2-21 전체 재정투융자의 GNP에 대한 비율	28
표 2-22 농림수산 부문 재정투융자의 GNP에 대한 비율	29
표 2-23 부처별 예산지출의 주요 項·細項, 1988~90	30
 제 3 장	
표 3-1 농림수산부 국별·청별 보조금, 1988	33
표 3-2 보조금액별 농림수산부 정책사업수, 1988	34
표 3-3 보조금 성격별 보조금 내역, 1988	36
표 3-4 한국의 PSE, 1988	37
표 3-5 의장초안의 정책구분과 한국 C/L상의 정책구분 비교	38
표 3-6 C/L상의 국내 농업보조금 내역	39
표 3-7 감축대상에 포함된 정책	39
표 3-8 의장초안에 의해 계산된 국내 농업보조금 내역	40
표 3-9 시나리오별 보조금 감축예상(1988년 기준)	40
 부표 1 농림수산부 예산의 항별·목별 분류	48
부표 2 수산청 예산의 세항별·목별 분류	59
부표 3 산림청 예산의 세항별·목별 분류	70
부표 4 농촌진흥청 예산의 세항별·목별 분류	81

## 그 림 목 차

### 제 2 장

그림 2-1 농림수산 재정지출 경로 .....	7
그림 2-2 豫算科目 歲出의 分類 .....	17
그림 2-3 응자자금의 지원경로 .....	22
그림 2-4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의 운용체계 .....	22
그림 2-5 중앙정부 재정투융자의 추이 .....	27
그림 2-6 농림수산 부문 재정투융자의 추이 .....	27

## 第 1 章

### 序 論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 협상 진전에 따른 수입개방의 가속화와 각종 정책보조금의 감축, 도농간의 소득격차와 농어촌의 생활환경 개선 요구, 식품소비 패턴의 변화와 생산구조의 변화 등 농림수산업을 둘러싼 여건의 변화는 농림수산업과 농산어촌의 새로운 위상 정립을 요구하고 있고, 이에 따라 농림수산정책을 수행하는 정부의 역할과 재정운영의 일대 전환이 불가피한 시점에 와 있다.

그러나 현행 농림수산 관련 정부의 재정지출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각종 기금 및 지방재정 등으로 그 지출 창구가 다양하여 농림수산 부문과 관련된 전체적인 재정규모가 불분명하고, 재정지출의 불합리성 존재 여부가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 현재 다지화되어 있는 농림수산 관련 재정지출을 체계적으로 분류 파악하고, 각종 지출 창구간의 상호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 일차적 목적을 두고, 이차적으로는 이를 토대로 현행 재정지출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정부의 재정지출이 새로운 농림수산 정책방향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농림수산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 第 2 章

### 農林水產 財政의 概況과 問題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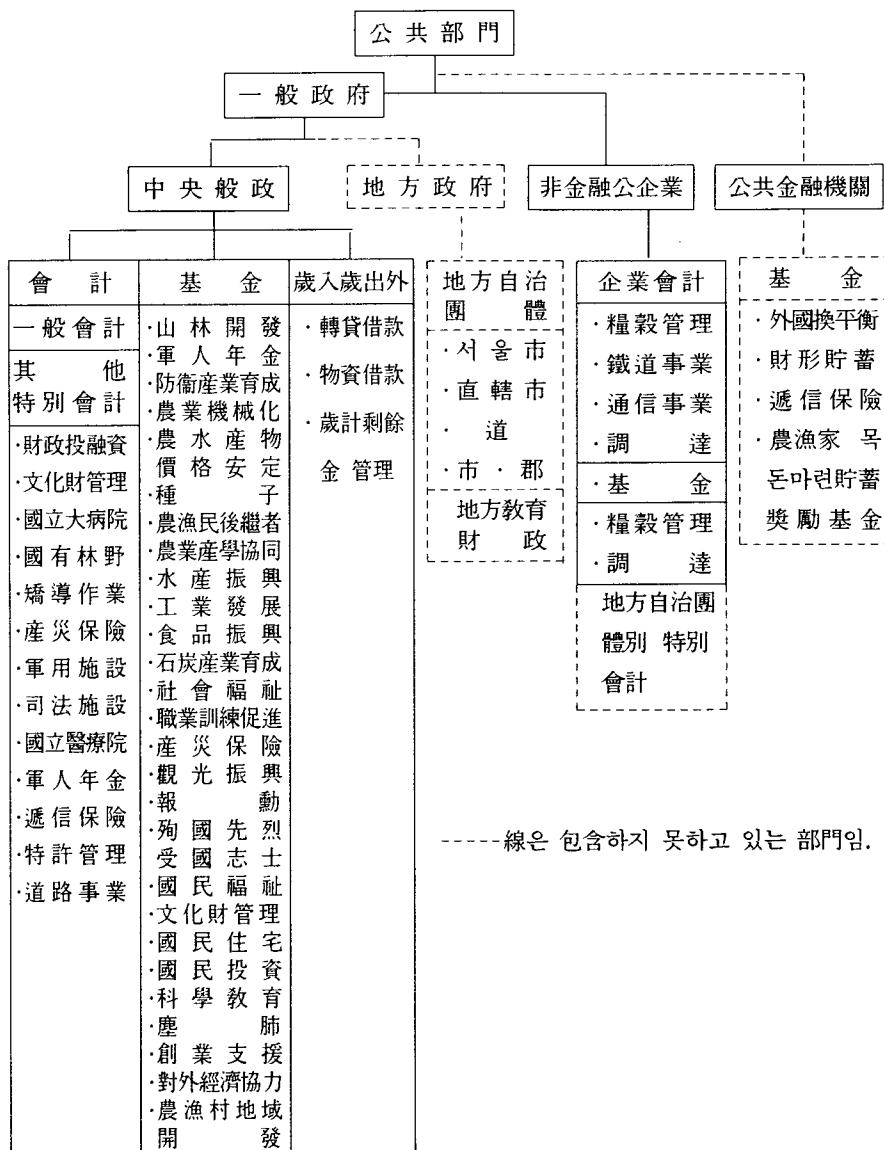
#### 1. 農林水產 財政의 概況

##### 가. 農林水產 財政의 包括範圍

財政은 “國家 및 기타 公共團體가 公共欲求를 총족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經濟的 活動”으로 定義된다. 따라서 財政의 範圍는 위의 정의에서의 “國家 및 기타 公共團體”에 中央政府만 해당되는지, 中央政府와 地方政府를 포함한 一般政府가 해당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아울러 財政의 主體가 확정되고나면 一般會計와 特別會計 등 豊算에 의한 活動만을 財政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기타의 公共活動도 포함해야 하는지에 따라 財政의 範圍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政府에서는 使用目的에 따라 總財政收支, 統合財政收支, 綜合財政收支를 作成하고 있는데, 본연구의 目的에는 綜合財政收支에서 包括하고 있는 範圍가 가장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표 2-1). 따라서 본연구에서는 綜合財政收支에 포함되는 一般會計, 其他特別會計, 基金, 그리고 非金融公企業 部門의 企業會計와 基金은 포함하되 歲入歲出外部門은 농림수산 부문만의 統計資料를 얻기가 힘들므로 제외하기로 한다.

표 2-1 綜合財政收支의 包括範圍



자료: 재무부, 「재정투융자 백서」, 1989.

종합재정수지의 포괄범위 중에서 농림수산 부문에 해당되는 경제행위는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 ① 중앙정부 예산에 의한 활동

一般會計 : 農林水產部, 水產廳, 山村廳, 農村振興廳

特別會計 : 財政投融資特別會計, 糧穀管理特別會計, 國有林野管理特別會計

### ② 政府基金에 의한 활동

糧穀管理基金, 農水產物價格安定基金, 國民投資基金, 種子基金, 農漁村發展基金, 山林開發基金, 農業產學協同基金, 農地管理基金 등 위의 基金들 중에서 國民投資基金은 財務部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基金의 일부분이 農機械購入資金에 대한 지원금으로 쓰이고 있다. 그리고 農漁村發展基金은 과거의 農漁村地域開發基金, 農漁民後繼者育成基金, 農業機械化促進基金, 그리고 水產振興基金 등이 흡수, 통합되어 1990년에 형성되었으며, 農地管理基金 역시 1990년에 설치되었다.

한편 위의 綜合財政收支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事業基金이나 民間基金 가운데 農林水產 部門과 관련이 있는 것은 農漁家 목돈마련貯蓄 嘉勵基金, 食品振興基金, 農林水產業者信用保證基金, 畜產振興基金, 農藥管理基金 등이 있다.

## 나. 農林水產 財政의 概況

### ① 農林水產 部門 財政支出

1989년 현재 農林水產部門의 總財政規模는 6兆 3,108億원(追更 포함)으로 中央政府의 總財政規模의 15.5%를 차지하고 있다.<sup>1)</sup> (<표 2-2, 2-3, 2-4>).

1) 이하 모든 계산치는 計定間의 內部去來를 差減한 純概念이다. 예를 들어 糧特會計의 경우 거의 全額이 糧穀管理基金에서 轉入된 것이므로 合算時 0 으로 처리되었고 반면 糧穀管理基金 가운데 財特에서 補填된 것은 財特의支出에만 포함시키고 양곡관리기금 지출액에서는 제외하여 계산하였다.

표 2-2 중앙정부 총재정 규모

단위: 백만원

연 도	일 반 회 계	재정투용자 특별회계 *	기 타 특별회계 *	기 금 합 계	총 계
1988	18,429,079	4,156,212	2,606,834	6,777,100	31,969,225
1989	22,046,825	5,242,938	4,191,335	9,234,000	40,715,098
1990	27,455,733	4,834,652	5,206,817	11,834,700	49,331,902

\* 특별회계는 세출순계임.

자료: 경제기획원, 「예산개요」, 각연도; 재무부, 「결산개요」, 각연도.

표 2-3 농림수산 부문 총재정 규모

단위: 백만원

연 도	일 반 회 계 *	재정투용자 특별회계	기 타 특별회계	기 금 합 계	총 계
1988	914,693	1,149,844	22,835	2,814,500	4,901,872
1989	1,277,125	1,377,183	28,795	3,627,782	6,310,875
1990	1,270,578	1,375,769	38,575	4,687,300	7,372,222

\* 농림수산부, 수산청, 산림청 및 농촌진흥청 예산임.

자료: 경제기획원, 「예산개요」, 각연도; 재무부, 「결산개요」, 각연도.

표 2-4 농림수산 부문 재정지출의 비중

단위: %

연 도	총 재 정 지 출	일반회계+특별회계	기 금
	농림수산부문/전체	농림수산부문/전체	농림수산부문/전체
1988	15.3	8.3	41.5
1989	15.5	8.5	39.3
1990	14.9	7.2	39.6

자료: 경제기획원, 「예산개요」, 각연도; 재무부, 「결산개요」, 각연도.

그러나 <표 2-3>에서 알 수 있듯이 농림수산 부문 재정은 재정 총 규모의 57.5% (1989년 기준)가 기금형태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中央政

府豫算에서 農林水產部門이 차지하는 비중은 8.5%에 불과하다. 반면 基金의 경우 農림수산부문이 전체의 39.6%를 차지하고 있어 여타 부문에 비해 農림수산재정 가운데 基金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기금 가운데서도 특히 糧穀管理基金의 비중이 커 1989년의 경우 財特轉入金을 除外한 支出額이 2兆 7,299億원으로 農림수산부문 전체 재정규모의 43.7%에 달하였다.

이상의 일반 및 특별회계와 모든 기금이 운용되는 경로는 1989년의 경우를 예로 들면 <그림 2-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즉, 일반회계와 재특회계가 農림수산부와 3개 외청의豫算을 이루고 있고, 각 기금들은 재특에서 받아들인 轉入金(1조 142억원)과 기타 운용수입 및 證券發行 등을 통해 收入金을 마련하여 사업을 행한다. 그리고 財特은 또한 農協, 畜協, 水協 및 山林組合을 통한 融資事業에 總 2,38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총 6조 3,108억원에 달하는 1989년도 農림수산재정을 農림수산부와 3개 外廳別로 나누어 보면 農림수산부가 전체의 95.2%를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기금의 경우 99.9%가 農림수산부 소관으로 되어 있어 農림수산재정에서 農림수산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표 2-5>).

표 2-5 農림수산 부문 재정지출의 부처별 분류(1989년 예산기준)  
단위: 백만원 (%)

	농림수산부*	수 산 청	산 림 청	농 전 청	계
일반회계	1,034,757 (81.0)	133,313 (10.4)	66,023 (5.2)	43,022 (3.4)	1,277,115 (100)
특별회계 (재특회계)	1,347,392 (95.8)	25,292 (1.8)	33,295 (2.4)	-	1,405,978 (100)
정부기금	3,624,784 (99.9)	-	2,300 (0.0)	629 (0.0)	3,627,713 (100)
계	6,006,933 (95.2)	158,604 (2.5)	101,618 (1.6)	43,651 (0.7)	6,310,80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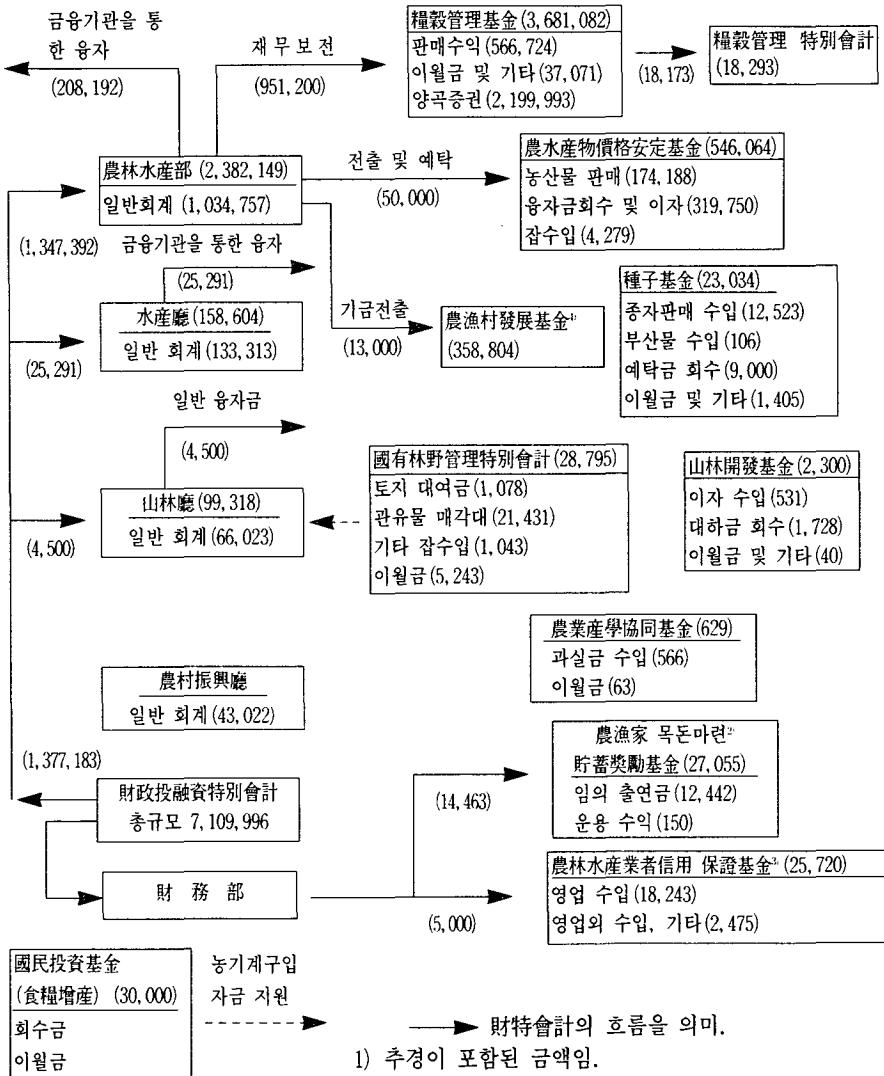
\*국민투자기금(식량증산)은 農림수산부에 포함시킴.

자료: 경제기획원, 「예산개요」; 재무부, 「결산개요」.

그림 2-1 농림수산 재정 지출경로<sup>1)</sup>

단위: 백만원

農林水產部門 總財政支出 : 6,310,806



→ 財特會計의 흐름을 의미.

- 1) 추경이 포함된 금액임.
- 2) 事業基金이므로 綜合財政收支에 미포함.
- 3) 民間基金이므로 綜合財政收支에 미포함.
- 4) 흡수 폐지되는 기금(農漁村地域開發, 農漁民後繼者育成, 農業機械化促進, 水產進興基金)의 합계임.

표 2-7 타부처 소관 농어촌지원 예산

단위: 백만원

	1985 (A)	1988	1989	1990 (B)	B/A
· 지방도 · 군도	162, 600	95, 100	296, 300	289, 100	1. 8
· 농어촌의료보험	3, 700	87, 500	115, 900	116, 500	31. 5
· 농공지구입주	-	55, 000	105, 000	120, 000	-
기 업 지 원					
합 계	224, 100	365, 300	666, 200	696, 200	3. 11

자료: 농림수산부, 「UR 이후 한국 농정의 대응방향」, 1990.

1985년과 財政投融資特別會計法<sup>2)</sup>이 시행된 1988년 이후의 농어촌지원 예산의 변화를 비교해 보면 농림수산 부문 예산 對 타부처 지원예산의 비율이 80:20으로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타부처 소관 지원예산의 내용은 <표 2-7>과 같은데, 특히 농어촌의료보험과 농공지구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이 크게 늘고 있다.

농림수산 부문 예산 즉, 농림수산부 및 3개 외청의 예산액 중 각 부처가 점하는 비중의 변화추세를 살펴보면 1980년대 초반에는 농림수산부와 3개 외청의 비중이 각각 70:30 정도였으나 1984년 이후 농림수산부의 비중이 85% 이상으로 높아져 1989년의 경우에는 88.8%에 달하였다(<표 2-8>). 이러한 결과는 1984년 이후부터 糧特赤字를 韓銀借入보다는 一般會計 또는 財特會計에서 補填해 주기 시작하면서<sup>3)</sup> 농림수산 부문 예산 중에서 3개 외청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발생하였다.

2) 財政投融資制度의 변천과정은 다음과 같다('재정투융자 백서', 1989. pp. 107~111).

가. 財政資金運用特別會計 : 1962~73

나. 經濟開發特別會計 : 1974~76

다. 資金管理特別會計 : 1977~87

라. 財政投融資特別會計 : 1988~現在

3) 財政投融資特別會計法에 따라 一般會計를 통해 이루어지던 政府出資 및 基金에의 出捐은 財特會計의 出資計定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으므로 양곡관리기금에 대한 재정지원금도 1988년부터는 재특에서 지출된다.

## ② 農林水產 部門 豫算

앞에서 살펴본대로 농림수산 부문 재정의 약 57.5% (1989년)는 여러 기금들로 형성되어 있다. 그런데 이들 기금의 수입에는 양곡증권의 발행 등과 같이 정부예산을 통하지 않고 형성된 부분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기금을 포함하여 농림수산 부문의 재정을 파악할 경우 농림수산부문이 전체 정부의 재정에 대해 차지하는 비중이 과대평가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만으로 이루어지는 농림수산 부문 예산의 규모와 그 지출상의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농림수산업 및 농어촌에 영향을 주는 정부 예산으로는 농림수산부와 3개 외청의 예산으로 구성되는 농림수산부문 예산과 함께 기타 부처의 농어촌 지원예산을 들 수가 있는데, 이 양자를 합한 예산을 농어촌지원 예산이라 부른다〈표 2-6〉. 1989년의 경우 전체 농어촌지원 예산은 3조 3,493억원이고, 이 중 농림수산 부문 예산은 2조 6,831억원으로 전체의 80.1%를 차지한 반면 농어촌도로건설, 농어촌의료보험 지원, 농공지구 입주기업 지원 등으로 지출되는 기타 부처 지원예산은 6,662억원으로 19.9%를 차지하였다.

표 2-6 농림수산부문 및 농어촌지원 예산

단위: 백만원

	1985 (A)	1988	1989	1990 (B) *	B/A
농림수산부문예산	912, 453 (80.3)	2, 087, 372 (85.1)	2, 683, 093 (80.1)	2, 684, 922 (79.4)	2. 94
타부처 지원예산	224, 100	365, 300	666, 200	696, 200	3. 11
전체농어촌지원예산	1, 136, 553 (100)	2, 452, 672 (100)	3, 349, 293 (100)	3, 381, 122 (100)	2. 97

\*1990년 2차 추경 포함.

자료: 경제기획원, 「예산개요」, 각연도; 재무부, 「결산개요」, 각연도.

표 2-8 농림수산부문 예산의 부처별 분류

단위: %

연 도	농 림 수 산 부	수 산 청	산 림 청	농 촌 진 흥 청
1980	70.8	12.1	13.3	3.9
1981	79.4	8.7	9.1	2.8
1982	74.6	10.2	11.1	4.1
1983	75.9	10.2	9.7	4.2
1984	75.0	11.5	9.5	4.0
1985	75.5	11.6	8.8	4.1
1986	76.0	12.3	7.3	3.7
1987	80.2	10.7	5.9	3.2
1988	88.2	5.9	4.0	1.8
1989	88.8	5.9	3.7	1.6
1990	87.5	6.3	4.4	1.8

농림수산 부문 예산이 주로 어떤 부문으로 지출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농림수산부 예산을 정부예산내역서상의 項別로, 그리고 각 외청의 예산지출을 細項別로 나누어 보았고〈표 2-9, 2-11, 2-12, 2-13〉, 농림수산부 예산의 각 항에 포함되는 細項들은 〈표 2-10〉에 정리되어 있다.

먼저 농림수산부 예산의 경우 1980~90년 사이에 양곡관리기금 및 비료계정에 전체의 23.7%가 지출되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 비율은 1988~90년에는 35.7%로 더욱 높아지고 있어 양곡관리기금에 대한 지원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을 알게 해 준다.

1980~90년 사이에 두번째로 높은 지출항은 농업용수개발이었으나 1988~90년 사이에는 농업개발항목의 지출이 15.0%로 두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 이 농업개발항은 주로 영농자금이나 차관사업에 대한 이차보전, 비료판매가격 차손보전, 그리고 농어가부채 경감대책 및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 등에 쓰이는 것이므로 결국 양곡관리기금에 대한 지원금과 함께 농업 및 농촌에 대한 기반투자보다는 단기적인 소득보상내지는 이차보상에 관한 지출이 농림수산부 예산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1988~90년의 경우 전체의 50.7%). 반

면 농업기계화, 용수개발, 생산기반 확충, 대단위농업종합개발, 유통개선, 그리고 농촌지역종합개발 등 구조개선과 관련된 항에 관한 지출은 1980~90년의 52.2%에서 1988~90년에는 38.4%로서 오히려 상대적인 비중이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역시 1988년 이후의 양곡관리기금에 대한 지원금이 급격히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농림수산부의 이와 같은 예산 구조는 UR을 비롯한 농업의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에의 적응을 제약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보다 기반투자의 비중을 강화하는 쪽으로의 예산지출 구조의 개편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표 2-9 농림수산부 예산의 항목 분류

단위: %

	1980 ~ 90년 평균비율	1988 ~ 90년 평균비율
식량증산	3.5	0.7
종자공급	0.5	0.3
농업기계화	4.5	3.7
농업용수개발	19.0	11.0
생산기반확충	9.9	9.0
대단위농업종합개발	13.0	4.3
유통개선	2.6	2.7
농특사업	1.1	0.3
축산사업	1.5	2.0
농업개발	10.9	15.0
농촌소득원개발	2.1	4.3
농촌지역종합개발	3.2	7.7
방조제축조	0.5	1.3
양곡기금 및 비료계정	23.7	35.7
농업행정	0.5	0.3
농수산통계	1.9	1.0
농산물검사	1.5	1.0
농업공무원교육	0.1	0.0
합계	100	100

자료: 농림수산부, 「예산내역서」, 각연도.

표 2-10 농림수산부 세출예산 분류

項	細	項
○ 식량증산(1500)	* 지력증진 (1511) * 영농개선 (1513) * 식물검역 (1515)	* 병충해방제 (1512) * 농산행정 (1514) * 농업자재검사(1516)
○ 종자공급(1600)	* 종자공급 (1611)	
○ 농업기계화(1700)	* 농업기계화 (1711)	
○ 농업용수개발(1900)	* 대중규모농업용수개발 (1911) * 채무상환(1913)	* 일반농업용수개발 (1912) * 농어촌개발행정 (1914)
○ 생산기반확충(2100)	* 경지정리 (2111)	* 농지조정 (2112)
○ 대단위농업개발 (2200)	* 영산강(Ⅱ)지구개발 (2212) * 논산지구개발 (2214) * 금강지구개발 (2216) * 미호천(Ⅱ)지구개발 (2219)	* 대호지구개발 (2213) * 삽교천지구개발 (2215) * 미호천(Ⅰ)지구개발 (2218) * 채무상환 (2221)
○ 방조제축조(2300)	* 금강하구둑 (2311) * 국가관리방조제개보수(2313)	* 영산강 (Ⅲ-1)방조제축조 (2312) * 영산강 (Ⅲ-2)방조제축조 (2314)
○ 유통개선(2400)	*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 (2411) * 유통조성(2413) * 유통행정 (2417)	* 산지유통 (2412) * 과수화훼산업육성 (2415) * 한국식품개발연구원 (2418)
○ 농특사업(2500)	* 임업사업 (2512)	* 임종장운영 (2514)
○ 축산사업(2600)	* 축산사업 (2611) * 종축생산관리 (2614)	* 축산행정 (2612)
○ 농업개발(2800)	* 이차보전 (2812) * 농어가부채경감대책지원 (2816)	* 농업정책행정 (2814)
○ 농촌소득원개발(2900)	* 농공지구조성 (2912) * 농어촌지역가로등 설치 (2916)	* 농촌소득원도로 (2913)
○ 농촌지역종합개발 (3200)	* 농촌지역종합개발(3211)	* 농어촌발전기금(3113)
○ 농업행정(1100)	* 기관운영 (1101)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112)	* 농업행정 (1111)
○ 농수산통계(1200)	* 통계기관운영 (1211)	* 통계조사 (1212)
○ 농산물검사(1300)	* 농산물검사 (1311)	
○ 농업공무원교육(5100)	* 농업공무원교육(5111)	
○ 양곡기금 및 비료 계정 (1800)	* 양곡관리기금 (1811)	

( ) 안은 정부 예산서상의 분류번호임.  
자료: 농림수산부, 「예산내역서」, 각연도.

〈표 2-11〉의 농촌진흥청의 예산구조를 보면 우선 1980~90년과 1988~90년 사이의 각 항간의 예산배분이 비교적 일정하여 큰 변화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기관운영을 제외하고 농촌지도와 연구 및 시험기능에 관한 지출로 양분했을 때 양자 사이의 비율은 약 18:82로서 연구 및 시험에 관한 지출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험 가운데서도 작물, 원예, 그리고 축산에 관한 지출(전체 예산지출의 16.7%)이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진흥청의 예산은 각 시험, 연구 및 지도 부문에 걸쳐 다양하게 지출되고 있으나 그 절대적인 액수가 너무 작아 1989의 경우 농림수산부 예산지출의 1.8% (495억원)에 불과한 실정인데, 진흥청 예산의 대부분이 R&D 및 지도사업에 관련된 것임을 감안

표 2-11 각연도 농촌진흥청 예산의 세항별 분류

단위: %

세 항	1980 ~ 90년 평균비율	1988 ~ 90년 평균비율
기 관 운 영	10.8	11.8
농 촌 지 도	17.5	15.6
농 업 기 술 연 구	9.6	9.5
가 축 위 생 연 구	4.9	5.6
농 기 계 화 연 구	2.3	2.0
맥 류 연 구	2.6	2.4
농 약 연 구	1.8	2.2
작 물 시 험	15.5	15.2
원 예 시 험	6.9	6.9
잠 업 시 험	2.8	2.9
축 산 시 험	7.5	7.8
고 령 지 시 험	3.5	3.1
제 주 시 험	2.1	2.2
시 험 연 구 지 원	10.4	10.0
농 업 경 영	0.8	1.1
시 험 및 검 정	0.5	0.7
국 제 농 업 기 술	0.5	0.6
합 계	100.0	100.0

자료: 농촌진흥청, 「예산내역서」, 각연도.

할 때 예산지원을 통해 진흥청의 연구 및 지도사업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수산청 예산은 지난 11년간의 지출 중 29.9%가 어항·어로시설에 지출되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재특에 의한 융자금으로 이루어진 수산개발(21.4%)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수산시험연구(9.2%)와 자원조성(9.2%)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연안자원의 고갈로 인한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증식사업이나 내수면개발, 그리고 자원조성에 관련된 예산비중이 1980~90년의 9.6%에서 최근 3년간에는 8.8%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고 어항, 어로시설이나 수산자금지원, 농어가부채대책, 수산시

표 2-12 각연도 수산청 예산의 세항별 분류

단위: %

세 항	1980 ~ 90년 평균비율	1988 ~ 90년 평균비율
수산 및 어업기술훈련	3.0	1.6
증 식 사 업	1.3	0.7
어 항, 어 로 시 설	29.9	30.2
내 수 면 개 발	1.2	0.7
원 양 어 업 개 발	0.7	0.0
자 원 조 성	6.9	7.4
수 산 물 유 통	0.1	0.5
수 산 자 금 지 원	4.3	8.2
어 업 지 도	9.2	6.6
해 역 별 거 점 항	5.2	5.5
농 어 가 부 채 대 책	1.3	4.8
수 산 행 정	6.5	5.4
수 산 시 험 연 구	9.2	10.2
수 산 개 발	21.4	18.2
합 계	100.0	100.0

자료: 수산청, 「예산내역서」, 각연도.

험연구 등의 예산배분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11년간의 산림청 예산지출 가운데 조림 및 육림과 사방에 관련된 지출이 절반 정도(52.0%)로 절대다수를 점하였으나 최근 3년 사이에는 그 비율이 33.3%로 급락하고 대신 산림보호, 임도시설, 국유재산 관리, 그리고 산림개발 등에 관한 예산지출이 14.4%에서 28.4%로 크게 증가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어 산림청의 예산이 과거의 조림 및 육림과 사방사업에서 산림보호 및 임도시설 등의 용도로 전환되어 지출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표 2-13 각연도 산림청 예산의 세항별 분류

단위: %

세 항	1980 ~ 90년 평균비율	1988 ~ 90년 평균비율
산 릴 행 정	8.8	11.1
산 릴 보 호	6.7	9.9
조 릴 및 육 릴	29.6	21.0
사 방	22.4	12.3
기 술 지 도	3.2	4.3
임 도 시 설	3.1	7.0
임 업 연 구	11.2	11.3
국 유 릴 경 영	10.1	11.1
국 유 재 산 관 리	2.0	7.5
법 정 부 담 금	0.1	0.2
예 비 비	0.3	0.1
산 릴 개 발	2.6	4.0
합 계	100.0	100.0

자료: 산림청, 「예산내역서」, 각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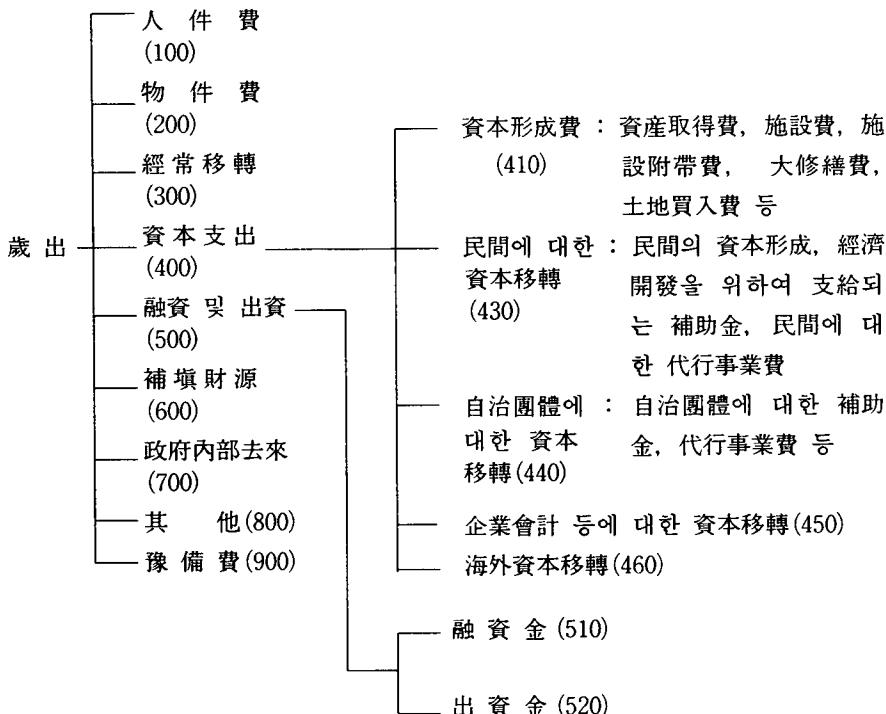
이상의 농림수산부와 3개 외청의 예산을 모두 모아 경제기획원이 「예산개요」상에서 분류하는 방식대로 주요 지출목적에 따라 크게 분류해 보면 <표 2-1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 양곡관리기금 지원과 농어가부담경감 및 금융지원 등 단기적인 금융지원액이 전체의 50.4%를 점하여 농업구조개선 및 생산기반 확충,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등의 기반투자(26.7%)를 훨씬 압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14 최근 3년간 농림수산 부문 주요 예산지출 구성

단위: 억 원 (%)

	1988	1989	1990	계
농업구조개선 및 생산 기반확충	4,995 (24.4)	6,384 (24.1)	7,422 (28.0)	18,801 (25.6)
농어가 부담경감 및 금융지원	3,876 (18.9)	4,979 (18.8)	4,458 (16.8)	13,313 (18.1)
양곡기금지원	5,384 (26.3)	9,512 (36.0)	8,800 (33.2)	23,696 (32.3)
소득안정 및 소득원 개발	2,281 (11.1)	2,193 (8.3)	1,957 (7.4)	6,431 (8.8)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	314 (1.2)	464 (1.8)	778 (1.1)
농촌지도	106 (0.5)	117 (0.4)	138 (0.5)	361 (0.5)
기타(채무상환 등)	3,087 (15.1)	2,051 (7.6)	2,161 (8.2)	7,299 (9.9)
산림자원 개발	758 (3.7)	899 (3.4)	1,070 (4.0)	2,727 (3.7)
계	20,487 (100)	26,449 (100)	26,470 (100)	73,406 (100)

그림 2-2 豫算科目 歲出의 分類



예산을 위에서 살펴본 대로 지출의 기능별로 분류하여 그 특징을 파악할 수도 있지만 歲出類型別로 분리하여 파악해 볼 수도 있다. 한국의 경우 IMF 財政統計上의 分類에 따라 <그림 2-2>처럼 세출을 분류하고 있다.

농림수산 부문 예산의 88.8%를 차지한 1989년도 농림수산부 예산을 項別 및 目別로 분류해 보면 <표 2-15>과 같다.

농림수산부 세출 중 경상이전이 57.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어서 자본지출(22.8%), 융자 및 출자(10.3%), 정부 내부지출(5.9%), 인건비 및 물건비 (2.5%), 보전재원(0.9%), 그리고 기타(0.1%)의 순서로 세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2-15 1989년도 농림수산부 예산지출의 항별·목별 분류

단위:백만원 (%)

項 目	인건비 및 물 전 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용자 및 출 자	보전재원	정부내부 지 출	기 타	합 계
식량증산	3,400 (31.3)	465 (4.3)	6,853 (63.0)	0	0	0	143 (1.3)	10,861 (100)
종자공급	3,001 (77.3)	0	880 (22.7)	0	0	0	0	3,881 (100)
농업 기계화	10 (0.0)	1,169 (1.6)	22,016 (30.3)	49,400 (68.0)	0	0	0	72,595 (100)
농업용수 개발	1,250 (0.5)	90,813 (33.4)	168,334 (61.9)	0	479 (0.2)	10,925 (4.0)	52 (0.0)	271,853 (100)
생산기반 확충	0	2,978 (1.6)	187,031 (98.4)	0	0	0	0	190,010 (100)
대단위 농업 종합개발	0	45,502 (48.4)	48,556 (51.6)	0	0	0	0	94,058 (100)
유통개선	157 (0.2)	5,972 (8.2)	10,574 (14.5)	36,000 (49.5)	20,000 (27.5)	0	42 (0.1)	72,745 (100)
농특사업	1,778 (26.4)	2,095 (31.1)	2,816 (41.8)	0	0	0	50 (0.7)	6,739 (100)
축산사업	9,888 (57.2)	3,691 (21.4)	3,551 (20.5)	0	0	0	157 (0.9)	17,287 (100)
농업개발	101 (0.0)	265,743 (68.0)	5	120,000 (0.0)	0	5,000 (30.7)	50 (1.3)	390,899 (0.0) (100)
농촌소득 원개발	3 (0.0)	0	58,767 (60.2)	38,792 (39.8)	0	0	0	97,562 (100)
방조제 조축	0	0	29,848 (100)	0	0	0	0	29,848 (100)
양곡기금 및 비료계정	0	951,200 (100)	0	0	0	0	0	951,200 (100)
농업행정	2,342 (41.5)	2,994 (53.1)	52 (0.9)	0	0	0	253 (4.5)	5,641 (100)
농수산 통계	20,635 (94.8)	43 (0.2)	660 (3.0)	0	0	0	424 (1.9)	21,762 (100)
농산물 검사	16,656 (92.3)	0	976 (5.4)	0	0	0	404 (2.2)	18,036 (100)
농업공무원 교육	830 (91.2)	0	58 (6.4)	0	0	0	22 (2.4)	910 (100)
계	60,063 (2.5)	1,372,716 (57.6)	542,177 (22.8)	244,192 (10.3)	20,479 (0.9)	140,925 (5.9)	1,597 (0.1)	2,382,149 (100)

자료: 농림수산부, 「예산내역서」, 1989.

따라서 財政投融資<sup>4)</sup>로 분류되는 자본지출과 응자 및 출자는 전체 예산의 33.1%로서 전체 정부의 재정규모에 대한 재정투융자 비율과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sup>5)</sup> 경상이전의 비중이 제일 크게 나타난 것은 양곡관리기금에 대한 지원금이 전액 포함되기 때문이다. 각 세출항들을 目別로 분류해 보면 기반투자에 해당되는 식량증산, 농업용수개발, 생산기반확충, 대단위농업종합개발 등의 경우 자본지출이 전체 지출액의 50% 이상을 차지하였고, 응자의 비중이 큰 세출항들은 농업기계화, 유통개선, 농업개발, 농촌소득원개발 등인데, 이것은 주로 위의 항들이 농기계구입자금이나 영농자금 등과 같은 응자의 성격을 띠고 지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위와 같이 분류된 농림수산부 예산 가운데 보조금에 해당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보조금 수준을 계측하는 것은 우리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보호 수준을 알 수 있고, 특히 UR협상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sup>6)</sup>

예산서상에서 보조금이라 할 수 있는 것은 目別 分類番號 315번인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431),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321), 그리고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441)를 들 수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응자금에 대한 利差補填(319)도 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으며, 양곡관리기금에 대한 정부지원금 역시 수매사업의 적자를 보충하기 위한 정부보조금이므로 보조금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이렇게 보조금을 정의하여 1988~90년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는 〈표 2-16〉에 나타나 있다. 1988년의 농림수산부 보조금은 1조 993억원이었는데, 1989년, 1990년에는 각각 1조 8,313억원과 1조 7,323억원으로 급증하였

4) 재정투융자에 대해서는 다음 節 참조.

5) 연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전체 중앙정부의 재정규모에 대한 재정투융자의 비율은 28.1~38.1% 정도이다(『재정투융자 백서』, PP. 28~31 참조).

6) 보조수준 및 정책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는 다음 章 참조.

표 2-16 농림수산부 예산중 보조금 비중

단위:백만원, %

구 분	1988	1989	1990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315)	152,661	143,888	141,161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431)	78,270	120,674	108,837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321)	350	1,419	40,643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441)	270,078	347,039	396,759
양곡관리기금 지원(331)	538,400	951,200	880,000
이차보전(319)	59,491	267,111	164,920
합 계 (A)	1,099,250	1,831,332	1,732,320
농림수산부 예산 중 사업비 (B)	1,791,315	2,322,086	2,269,805
(A/B) × 100	61.4	78.9	76.3

( )안은 정부예산의 목별 분류번호임.

자료: 농림수산부, 「예산내역서」, 각연도.

고, 이러한 보조금의 급격한 증가는 동기간 동안의 양곡관리기금 지원금의 대폭적인 확대에 따른 것이다. 한편 농림수산부 예산 가운데 인건비와 물건비를 제외한 부분을 事業費라 정의할 경우 보조금이 사업비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1~79%가 되어 농림수산부 예산 가운데 보조금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고, 보조금 가운데서도 특히 양곡관리기금 지원액이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③ 農林水產 部門 財政投融資

財政投融資라는 말은 여러 가지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용어상으로도 통일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먼저 재정투융자의 개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케인즈 거시경제이론에서 논의되는 乘數效果 (multiplier effect)를 가지는 독립적인 政府支出을 모두 포함하는 '財貨와 用役에 대한 政府支出' 을 재정투융자로 보는 경우가 있다.

둘째로, 정부지출을 經常支出과 資本支出로 구분하고, 實物資本의 形成을 목적으로 하는 資本支出만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즉, 정부지출 가운데서 人件費와 消費的인 物件費(經常支出)를 제외한 건물, 설비, 기계, 도로, 교량, 댐, 공원녹지 건설, 전력개발, 국토보전, 재고증가 등 政府資產을 增大시키는 일체의 지출, 즉 기본적 기능을 수행하는 재정지출의 전반을 가리키는 경우이다.

셋째로, 財政資金 및 各種 融資基金 등의 有償資金을 中心으로 정부가 民間產業이나 政府政策事業에 대하여 出資 또는 融資의 形태로 貸借關係를 맺는 지출, 즉 金融的 投融資活動만을 지칭하는 경우이다.<sup>7)</sup>

우리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재정투융자의 개념은 이상의 둘째번의 실물자본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의 자본지출과 세째번의 정부의 금융적 투융자활동을 합쳐서 말하는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정부 예산서상에서 400번대의 자본지출과 500번대의 일부인 정부출자를 합하여 재정투자로 보고, 나머지 500번대인 재정융자와 위의 재정투자를 합하여 재정투융자라고 정의한다.

재정투융자가 집행되는 경로를 보면 우선 자본지출은 정부지출 중 인건비, 소비적 물건비를 제외한 설비, 기계의 구입, 건물, 도로, 가교, 댐의 건설, 재고증가 등 정부자산을 증대시키는 일체의 지출을 말하는 것이며, 정부출자는 국가기능을 대행하는 정부투자기관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금 및 토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현물출자와 현금출자가 있는데, 1988년부터 재정투융자 특별회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그 동안 일반회계를 통해 이루어지던 정부출자 및 법률에 의한 출연은 재특회계의 출자계정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정부출자의 재원은 정부출자에 따른 배당수입과 정부보유주식 매각을 주된 재원으로 하고 부족분은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충당한

7) 이상의 재정투융자의 개념에 관해서는 「재정투융자 백서」, 1989. PP.

11~12 참조.

다. 한편 재정융자는 재특회계의 융자계정에서 집행되며, 융자자금의 지원경로는 융자기관(금융기관)을 통한 지원과 기금 또는 특별회계예탁을 통한 지원의 두 가지가 있다〈그림 2-3, 2-4〉.

그림 2-3 융자자금의 지원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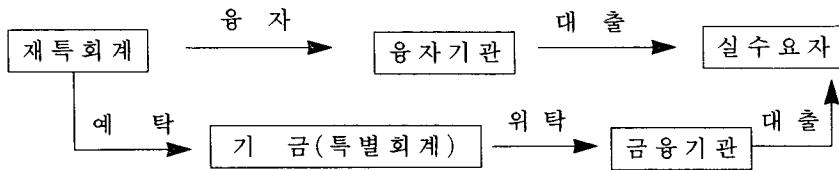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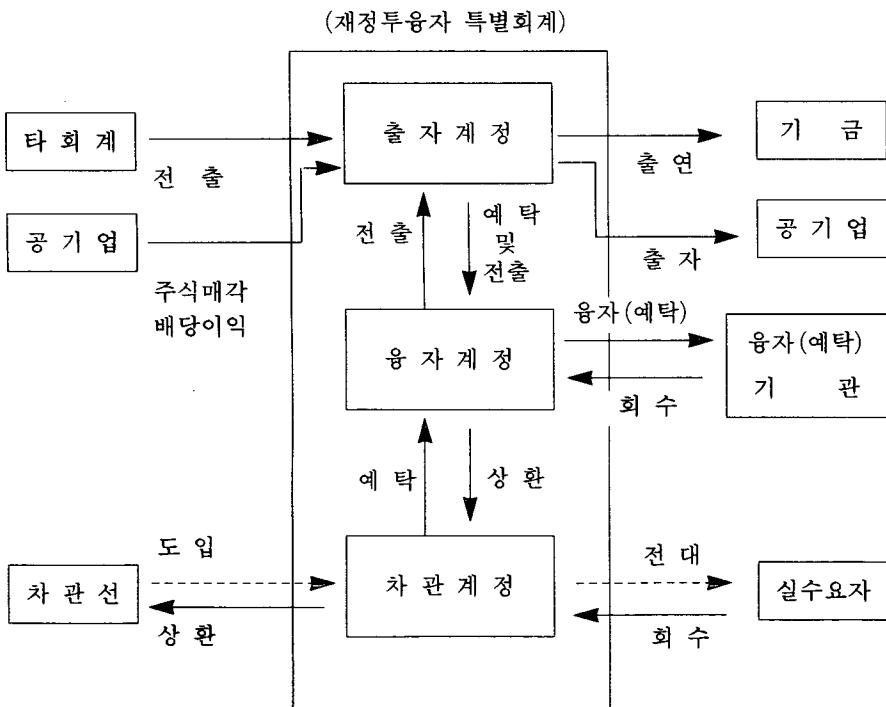


그림 2-4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의 운용체계



→ 는 예산외 운용을 표시.

재정투융자가 歷史的으로 국민경제에 대해 미친 영향은 대체로 다음 3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재정투융자 백서」, 1989. pp. 12~13).

첫째, 資本主義의 발전과정에서 市場機構가 自動調整力を 상실함에 따라 國家가 적극적으로 경제과정에 개입하여 경제의 安定과 成長을 가능하게 한다.

둘째, 日本의例에서 볼 수 있듯이 재정투융자는 後進資本主義를 計劃的으로 발전시키는 原動力이 될 수 있다.

셋째, 아직 충분한 民間資本을 蕢積하지 못한 低開發 新生國家의 경제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재정투융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과거의 재정투융자가 주로 민간자본 형성의 기능을 수행했다면 1980년대 이후에는 시장경제 보완기능의 측면이 강하게 부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위와 같이 정의된 재정투융자를 본연구에서 취하고 있는 재정의 범위에 맞추어 계산해 보면 먼저 전체 중앙정부의 경우는 <표 2-17>과 같다. 1988년의 총 재정투융자액수는 9조 1,196억원으로서 1980년에 비해 2.83배로 증가한 액수이다. 이 중 재정투자는 5조 673억원이고, 재정융자는 4조 523억원으로 재정투자가 조금 더 많았다. 재정투자 중에서는 일반회계의 비중이 가장 컸으며, 재정융자 가운데서는 기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2-17 중앙정부 재정투융자

단위: 백만원

연도	재정투자(자본지출 + 정부출자)					재정투자합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세입 세출외	비금융 공기업	
1980	1,288,816	51,452	65,841	0	740,401	2,145,510
1981	1,551,089	67,422	56,038	0	981,476	2,656,025
1982	1,935,259	75,962	401,971	141,322	221,599	2,776,113
1983	2,105,438	104,715	81,178	98,352	180,767	2,570,450
1984	2,288,371	108,117	73,900	136,800	185,005	2,792,193
1985	2,559,493	119,087	44,300	110,900	207,908	3,041,688
1986	3,074,354	154,351	92,502	106,300	229,750	3,657,157
1987	3,608,527	177,673	129,493	267,206	277,386	4,460,285
1988	4,133,372	359,438	207,532	90,248	276,711	5,067,309
연도	재정융자			재정융자합계	재정투융자합계	
	재특회계	기금	재정차관 전대			
1980	174,864	623,152	280,189	1,078,205	3,224,715	
1981	219,386	1,471,485	557,214	2,248,085	4,904,110	
1982	257,212	1,263,071	431,762	1,952,045	4,728,158	
1983	287,309	1,533,588	302,226	2,123,123	4,693,573	
1984	330,600	2,462,801	328,528	3,121,929	5,914,122	
1985	489,700	3,067,842	499,349	4,056,891	7,098,579	
1986	566,000	2,567,199	203,523	3,336,722	6,993,879	
1987	661,900	2,576,205	423,196	3,661,301	8,121,586	
1988	1,264,900	2,619,676	167,714	4,052,290	9,119,599	

자료: 재무부, 「결산개요」, 「한국의 재정통계」, 「재정투융자 백서」, 각연도.

한편 농림수산부문 재정투융자는 1988년의 경우 1조 8,406억원이었고,<sup>8)</sup> 이 가운데 재정투자는 5,608억원, 재정융자는 1조 2,799억원이었다.

8) 재정투자 중 세입세출외는 농림수산부문만의 자료를 얻을 수 없어 생략하였다. 그러나 세입세출외는 중앙정부의 경우 전체 재정투융자금액의 1% 미만으로 매우 작은 액수를 나타내고 있다.

표 2-18 농림수산 부문 재정투융자

단위: 백만원

연도	재정투자(자본지출 + 출자)			재정투자합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비금융공기업		
1980	184,784	629	120	185,533	
1981	340,977	583	110	341,670	
1982	310,400	808	259	311,467	
1983	305,203	617	172	305,992	
1984	346,048	845	50	346,943	
1985	350,651	931	104	351,686	
1986	420,156	1,096	69	421,321	
1987	592,463	1,543	1,165	595,171	
1988	552,903	6,401	1,446	560,750	
연도	재정용자			재정용자합계	재정투융자합계
	재특회계	기금	재정차관 전대		
1980	38,141	118,452	7,045	163,638	349,171
1981	53,089	174,579	273,425	501,093	842,763
1982	68,200	223,842	15,946	307,988	619,455
1983	76,700	262,272	13,372	352,344	658,336
1984	81,500	267,579	7,279	356,358	703,301
1985	134,300	382,083	4,841	521,224	872,910
1986	185,900	374,228	9,662	569,790	991,111
1987	232,900	669,718	40,868	943,486	1,538,657
1988	434,100	801,916	43,880	1,279,896	1,840,646

자료: 재무부, 「결산개요」, 「한국의 재정통계」, 「재정투융자 백서」, 각연도.

중앙정부 전체 재정투융자와 농림수산부문의 재정투융자를 비교해 보면 1980~88년 사이에 평균 15%의 재정투융자가 농림수산부문에 지원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 비율을 시계열로 보면 1980년대 초반에는 냉해에 대한 보상지원(주로 차관 도입)이 많았던 1981년을 제외하고

는 전체의 11~14%로 일정하던 농림수산부문 재정투융자가 1987년부터 매우 크게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80년대 후반에 농림수산부문 재정투융자의 비중이 이렇게 급격히 커지는 것은 1988년부터 재특이 실시되면서 특별회계를 통한 재정투자 및 융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농어촌 지역개발 기금의 신설 및 기타 기금의 확장에 따른 기금 융자액이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한편 농림수산업의 재정투융자의 비중을 재정투자와 재정융자로 분리하여 살펴보면 <표 2-20>과 같다. 이에 따르면 재정투자에 있어서의 농림수산부문 비중이 11.6%임에 반해 재정융자는 18.7%로서 재정융자

표 2-19 농림수산 부문 재정투융자의 비중

단위: 억원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평균
중앙정부 전체 (A)	32,247	49,041	47,282	46,936	59,141	70,986	69,939	81,216	91,196	
농림수산부문 (B)	3,491	8,428	6,195	6,583	7,033	8,729	9,911	15,387	18,406	
B/A	0.11	0.17	0.13	0.14	0.12	0.12	0.14	0.19	0.20	0.14

표 2-20 농림수산 부문 재정투융자의 비율

단위: 백만원, %

연도	재정융자			재정투자		
	농림수산부문	중앙정부	비율	농림수산부문	중앙정부	비율
1980	185,533	2,146,510	8.6	163,638	1,078,205	15.2
1981	341,679	2,656,025	12.9	501,093	2,248,075	22.3
1982	311,467	2,776,113	11.2	307,988	1,952,045	15.8
1983	305,992	2,570,450	11.9	352,344	2,123,123	16.6
1984	346,943	2,792,193	12.4	356,358	3,121,929	11.4
1985	351,686	3,041,688	11.6	521,224	4,056,891	12.8
1986	421,321	3,657,157	11.5	569,790	3,336,722	17.1
1987	595,171	4,460,285	13.3	943,486	3,661,301	25.8
1988	560,750	5,067,309	11.1	1,279,896	4,052,290	31.6
평균			11.6			18.7

의 비중이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농림수산 부문 재정에 있어 기금을 통한 용자의 비중이 타 부문에 비해 매우 크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중앙 정부 재정투융자와 농림수산 부문 재정투융자를 각각 그림으로 그려 보면 〈그림 2-5, 2-6〉, 우선 중앙정부의 재정투융자와 농림수산부문 재정 투융자는 비슷한 변화 양상을 보여 주고 있으나 중앙정부의 경우 1985년 한 해를 제외하고는 재정투자가 줄곧 재정융자보다도 더 많았으나

그림 2-5 중앙정부 재정투융자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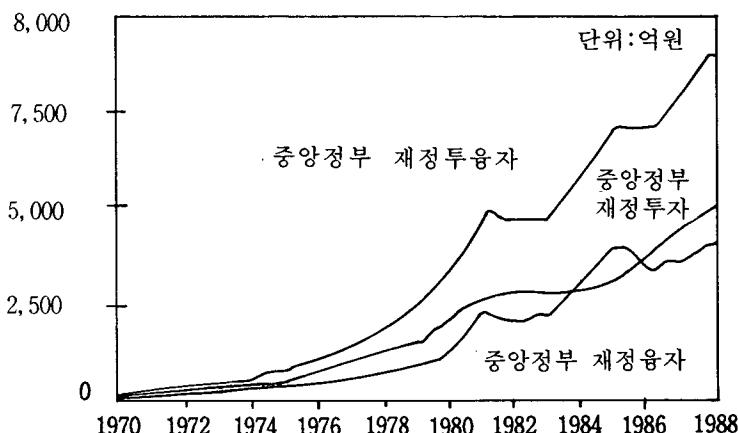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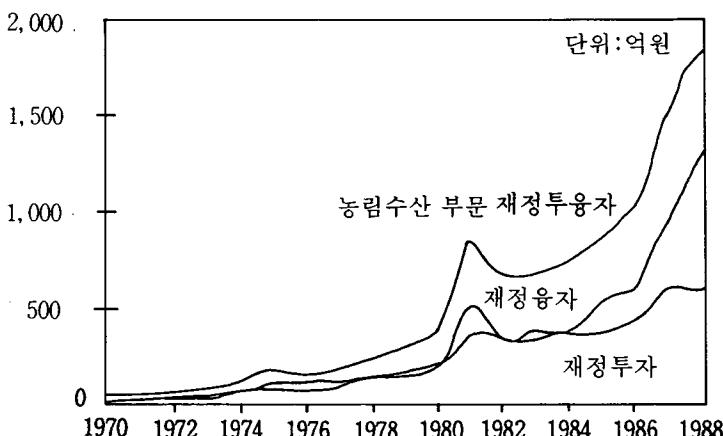


그림 2-6 농림수산 부문 재정투융자의 추이



농림수산 부문의 경우 1984년 이후 투자와 융자간의 역전이 발생하여 재정투융자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재정투융자가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구해보면 전체 중앙정부가 1980년~88년 사이에 8.5%임에 비해 동기간 동안 농림수산 부문은 9.5%를 기록하여 농림수산부문이 GNP에 대한 상대적 비율 면에서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농림수산 부문의 GNP 성장률이 전체 부문에 비해 낮고 반면에 농림수산 부문의 재정투융자는 1987~88년 사이에 융자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여 1980년대 후반의 GNP에 대한 재정투융자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데 따른 것이며, 1980년대 초반에는 냉해 복구를 위해 융자지출이 많았던 1981년을 제외하고는 농림수산부문 재정투융자의 GNP에 대한 비율이 전체 부문보다도 오히려 낮았으며, 1970년대에도 이러한 추세가 유지되어 왔다. 따라서 결국 1980년대 중반까지는 농림수산 부문은 GNP에 대한 기여도에 비해 재정투융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았다고 할 수 있다.

표 2-21 전체 재정투융자의 GNP에 대한 비율

단위: 10억 원, %

연 도	전체 GNP(A)	재정투융자(B)	비율 (B/A × 100)
1980	36,730	3,225	8.8
1981	45,528	4,904	10.8
1982	52,182	4,728	9.1
1983	61,722	4,694	7.6
1984	70,084	5,914	8.4
1985	78,088	7,099	9.1
1986	90,599	6,994	7.7
1987	106,025	8,122	7.7
1988	126,230	9,120	7.2
평균			8.5

표 2-22 농림수산 부문 재정투융자의 GNP에 대한 비율

단위: 10억 원, %

연 도	농림수산부문GNP(A)	재정투융자(B)	비율 (B/A × 100)
1980	5,677	349	6.1
1981	7,431	843	11.3
1982	7,989	620	7.8
1983	8,678	658	7.6
1984	9,392	703	7.5
1985	10,352	873	8.4
1986	10,729	991	9.2
1987	11,353	1,539	13.6
1988	13,494	1,841	13.6
평균			9.5

## 2. 農林水產 財政의 問題點

지금까지 살펴본 농림수산재정의 현황에 비추어 볼 때 대내외적인 여건변화에 농림수산업 및 농어촌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이 운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최근 3년간 농림수산재정 규모가 대폭 커졌으나 政治圈에서의 추곡 수매량 확대와 수매가 인상 요구, 농어민 부채경감 요구 등 經濟外的 要因에 의한 압력으로 농림수산부 예산중 양곡기금지원과 농어가 부담경감 및 금융지원 등의 비중이 50%에 육박하고 있어 농업구조개선이나 기반조성,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등 농업의 장기적 정책방향과 부합되는 방향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표 2-23)。

표 2-23 부처별 예산지출의 주요 項·細項, 1988 ~ 90

단위: %

농 림 수 산 부	수 산 청	산 림 청	농 촌 진 흥 청
양곡기금 및 비료계정 (35.7)	어항, 어로시설 (30.2)	조림 및 육림 (21.0)	농 촌 지 도 (15.6)
농 업 개 발* (15.0)	수 산 개 발 (18.2)	사방 (12.3)	작 물 시 험 (15.2)
농 업 용 수 개 발 (11.0)	수 산 시 험 연구 (10.2)	임 업 연 구 (11.3)	기 관 운 영 (11.8)
생 산 기 반 확 충 (9.0)	수 산 자 금 지 원 (8.2)	국 유 림 경 영 (11.1)	시 험 연 구 지 원 (10.0)
농촌지역종합개발 (7.7)	자 원 조 성 (7.4)	산 림 행 정 (11.1)	농업기술연구 (9.5)

\* 농업개발은 이차보전, 농어가부채 경감대책 지원, 농업정책 행정 등임.

둘째, 1989년 기준으로 볼 때 정부예산 전입금을 제외하고 自體收入이나 外部借入金을 통해 조성, 지출된 농림수산 관련기금이 전체 농림수산 재정규모의 57.4%를 차지하여 농림수산 부문의 재정지출이 전반적으로 直接投資보다는 融資의 형식을 띠고 있고, 1984년 이후에는 재정투융자 가운데 재정융자의 비중이 재정투자의 비중보다도 더 큰 상태이다. 그러나 이들 응자는 단기적인 보조의 성격이 강하고 UR의 협상 결과에 따라 응자중심의 정부보조는 규제될 가능성이 크므로 장기적으로 보아 재정구조의 변화가 요구된다.

셋째, 농림수산 재정 가운데서 1980년대 중반 이후 水產과 山林分野의 상대적 비중이 지나치게 약화되어 왔는데, 이들 분야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대적 요청에 비추어 볼 때 수산 및 산림분야의 재정규모가 커져야 할 것이다.

넷째, 水產分野에 있어 최근 不法漁獲과 일부 魚種과 관련된 漁船勢力의 과다보유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반해 水產資源造成이나 不法漁

획을 억제할 수 있는 인력 및 장비지원에 대한 예산배분이 극히 낮은 수준이다.

다섯째, 山林分野에 있어서는 최근 休養林造成 등 산림 및 산지의 이용에 관한 새로운 수요가 급증하고 山林機能에 관한 인식의 급격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造林 및 育林과 사방공사에 대한 예산배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 농업의 장기적 발전방향이 研究開發 및 技術普及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면 농촌진흥청에 대한 예산배분이 농림수산 예산의 1.6% (1989년 기준)에 불과하다는 것은 심각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第 3 章

## UR 協商과 財政에 의한 農業補助金 減縮

향후 우리 나라 농업정책의 일대전환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 협상은 비관세장벽의 관세화와 국내 농업보조금 및 수출보조금의 점진적 감축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중에서 국내 농업보조금의 감축은 농림수산 재정의 운용한계를 제약하는 외부적 요인으로서 농정의 방향과 재정투입의 선별적 적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정부에 의하여 행해지고 있는 각종 농업보조금의 내역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UR 협상 결과에 따라 감축이 예상되는 보조금 총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추계함으로써 앞으로의 농림수산 재정운용에 관한 개선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자 한다. 여기서 다루게 될 내용은 보조금에 관한 일반적인 이론적 접근방식보다는 직접적인 현안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협상과 관련하여 우리 나라의 농업보호 현황자료 (Country list) 작성에 사용되었던 1988년도 농업 및 산림부문의 보조금 현황과 OECD 방식에 기초를 둔 생산자보조상당액 (PSE), 총량측정장치 (AMS)를 통하여 예상되는 가상적인 시나리오하에서 UR 협상이 한국 농업의 보조금 감축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주로 다루기로 한다.

## 1. 農業補助金의 細部現況

제2장에서 이미 거시적인 관점에서 농림수산 부문의 총보조금에 대하여 언급한 바가 있으나, 여기서는 농업에 관한 정부보조를 보다 미시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표 3-1>은 1988년도 농림수산부와 농촌진흥청, 산림청의 局別·廳別 보조금을 나타낸 것으로서, 이에 따르면 농업보조금 총액 1조 3,221억원중 절반 가량이 국고에서 충당되었고, 기금이 33%, 지방보조를 통한 지원이 10%, 응자가 9%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응자를 통한 보조는 응자총액에 농협의 일반대출 금리수준(11.5%)과 정책금리와의 차이를 곱한 이차보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농민이 실제로 혜택을 받는 보조액을 나타낸다. <표 3-1>은 정부예산서상에 나타나지 않는

표 3-1 농림수산부 국별·청별 보조금, 1988

단위: 백만원

	국 고	지방비	기 금	응 자	계
농 산 국	28,660 (56.6)	9,521 (18.8)	4,174 (8.2)	8,290 (16.4)	50,645 (3.8)
축 산 국	48,492 (31.1)	2,573 (1.7)	78,092 (50.1)	26,608 (17.1)	155,765 (11.8)
농 어 촌 개 발 국	489,000 (89.0)	58,000 (10.6)	0 (0.0)	2,702 (0.5)	549,702 (41.6)
양 정 국	2,400 (0.9)	0	261,321 (99.1)	0	263,721 (19.9)
농 산 물 유 통 국	3,164 (3.1)	210 (0.2)	90,854 (88.1)	8,891 (8.6)	103,119 (7.8)
농업구조 정 책 국	66,100 (34.5)	53,800 (28.1)	0	71,575 (37.4)	191,475 (14.5)
농 촌 진 홍 청	3,256 (53.2)	2,860 (46.8)	0	0	6,116 (0.5)
산 림 청	25 (1.6)	624 (40.5)	0	891 (57.9)	1,540 (0.1)
계	641,097 (48.5)	127,588 (9.7)	434,441 (32.9)	118,957 (9.0)	1,322,083 (100.0)

지방비 내역과 각 局에서 수행되고 있는 보조금을 보여준다는 점이 하나의 특징이다. 각 국별 보조금 집행실적을 보면 경지정리, 농지조성, 대단위 종합개발 등을 맡고 있는 농어촌개발국이 전체 농림부문 보조금의 약 42%인 5,500억원을 차지하고 있고, 양곡수매와 양곡도매시장 건립을 담당하고 있는 양정국이 2,637억원으로 전체 보조금의 20%를, 농기계사업, 농외소득원개발 및 영농후계자사업을 담당하는 농업구조정책국이 14.5%인 1,915억원을 보조금으로 집행하였다. 그 다음으로 축산국, 농산물유통국, 농산국의 순으로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다.

표 3-2 보조금액별 농림수산부 정책사업수, 1988

단위: 個

	백만원 미 만	백만원~ 천만원 미만	천만원~ 1억원 미만	1억원~ 10억원 미만	10억원~ 100억원 미만	100억원~ 1,000억원 미만	1,000억원 이 상	계 (%)
농 산 국		8(8)	13(13)	7(5)	9(3)	2		39(29) (14.3)
축 산 국	3(3)	16(9)	44(18)	32(8)	15(1)	4		114(39) (41.9)
농 어 촌 개 발 국				1	4	8	2	15 (5.5)
양 정 국					2	1	1	4 (1.5)
농 산 물 유 통 국	1	10(10)	20(19)	14(9)	3(2)	1		49(40) (18.0)
농업구조 정 책 국			3(3)	6(6)	2(1)	6(2)		17(12) (6.3)
농 촌 진 흥 청			9	9	1			19 (7.0)
산 림 청	1	2	8(4)	4(1)				15(5) (5.5)
계 (%)	5(3) (1.8)	36(27) (13.2)	97(57) (35.7)	73(29) (26.8)	36(7) (13.2)	22(2) (8.1)	3 (1.1)	372(125) (100.0)

( )안의 수치는 농업보조 중 음자를 통한 정책사업수임.

〈표 3-2〉는 보조금액수별 농림수산부 정책사업수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의하면 농림수산부가 수행하고 있는 각종 보조정책사업은 무려 270여개로 세분화되어 있어 이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들 정책의 상당수가 각 국이 관장하고 있거나 관련되는 작목에 대한 각종 지원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특정사업에 대한 보조나 지원을 축소조정할 경우 소관 局이나 課는 물론 수혜대상농민의 불만이 예상됨에 따라 종래의 지원정책을 관행적으로 유지하게 되고 또한 새로운 정책사업이나 이해집단에 대한 지원이 추가되어 예산의 증가가 농업의 근본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데 투입되지 못하고 경직된 형태로 계속 운영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예를 들면 〈표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축산국은 무려 114개의 정책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표 3-1〉에서 나타난 局別 농업보조금 집행실적이 가장 적은 농산국의 경우나 유통국의 경우도 40~50개의 정책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수많은 정책사업 지원은 결과적으로 사업당 지원액수를 소액화시킴으로써 사업지원액이 1,000만원 미만의 소규모사업이 전체의 15%나 차지하게 되고, 사업규모 10억원 미만의 정책사업이 전체 사업의 77.5%나 차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한편 농림부문 보조금 성격별 보조금 내역을 보면 〈표 3-3〉, 농어촌개발국이 시행하는 경지정리, 용수개발, 대단위종합개발 등과 농산국의 토지개량사업과 농업구조정책국의 농지구입자금 지원 등의 구조개선에 관련된 보조금에 총보조금의 43%인 5,700억원이 소요되었고, 유통국의 양곡관리기금과 농안기금을 통한 양곡류와 양념채소류 수매결손액인 가격지지에 약 26%인 3,490억원, 농기계구입자금, 영농자금, 농어민후계자 육성자금, 비료대금 지원 등의 생산요소보조가 약 11%인 1,400억원, 유통촉진에 8.5%인 1,120억원과 농업구조정책국의 농외소득원 개발, 지역개발 및 축산국의 학교 우유급식 등에 소요된 기타 보조 부문이 약 7%인 900억원이 지원되었으며, 면세, 연구개발

및 지도, 위생·진료·방역방제, 재해보상에 대한 정부보조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3 보조금 성격별 보조금 내역, 1988

단위: 백만원

	농산국	축산국	농어촌 개발국	양정국	농산물 유통국	농업구조 정책국	농 촌 진흥청	산림청	계 (%)
가격지지				258,921	90,254				349,175 (26.4)
생산요소보조					93	78,006		503	141,654 (10.7)
1) 생산요소 보 조	27,231	35,821					15,700		15,700 (1.2)
2) 면 세									
일반서비스									
1) 연구개발 지 도	743	12,743				1,291	6,116		20,893 (1.6)
2) 위생 및 진료 방역방제	4,179	6,110						10	10,299 (0.8)
3) 구조개선	7,813		549,702		747	13,000			571,262 (43.2)
4) 유통촉진	1,784	93,905		4,800	12,020			596	112,105 (8.5)
5) 재해보상	9,895	142			5				10,042 (0.8)
6) 기 타		7,044				83,478		431	90,953 (6.9)
계	50,645	155,765	549,702	263,721	103,119	191,475	6,116	1,540	1,322,083 (100.0)

1) 생산요소 보조에는 영농자금 지원이 포함됨.

6) 기타에는 농외소득원 개발, 지역개발, 학교 우유급식 등이 포함됨.

## 2. 國內補助 減縮의 推算

UR 협상에 따라 국내농정의 근간을 이루어 오던 보조금이 얼마나 감축될 것인가를 계측하는 것은 감축될 재원을 얼마나 여타 부문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와 직결되므로 여기서는 먼저 GATT 사무국에서 제시한 방식에 근거하여 우리 나라의 현재 농업보조금(1988년 현재) 중 감축대상이 얼마나 되며, 상황에 따라 얼마나 감축해야 되는지를 살펴보자 한다.

### 가. 총량보호 측정장치(AMS)의 계측

UR 농산물 그룹 의장초안에 따라 한국은 1990년 10월에 농업과 관련된 농업보호 현황(C/L: Country List)을 제출한 바 있다.

C/L의 내용 중에서 국내보조는 품목별로 AMS에 의해 계측되었는데, 한국은 AMS를 계측함에 있어 OECD의 PSE 산출방식을 따르되, 한국의 농업 현실을 고려하여 일부 대상정책을 재분류하여 <표 3-4>에서

표 3-4 한국의 PSE, 1988

	I 총생산액	II 시장가격지지 (백만원)	III 총 PSE (백만원)	퍼센트PSE (백만원) (III / I) × 100	재정지출보조비중 ((III - II) / I) × 100
쌀	6,289,067	4,757,658	5,449,759	86.7	11.0
보리	349,888	270,226	287,155	82.1	4.8
콩	245,453	197,414	200,930	81.9	1.4
옥수수	43,688	33,274	33,991	77.8	1.6
쇠고기	714,870	499,200	595,403	83.3	13.5
돼지고기	1,049,827	447,203	470,167	44.8	2.2
닭고기	242,580	93,865	98,430	38.5	1.9
계란	274,360	62,348	67,709	24.7	2.0
우유	525,504	390,461	417,785	79.5	5.2

보는 바와 같은 품목별 생산자보조액을 산출하였다. 그러나 총보조액의 대부분은 수입제한을 통한 국내가격과 국제가격간의 차이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이 부분을 제외한 순수 재정보조에 의한 퍼센트 PSE는 국내생산액의 1.4~13.5% 수준이다. 재정보조에 의한 국내농업보조 가운데 감축대상이 되는 국내보조금은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낸 것이 <표 3-6>이다.

그런데 <표 3-6>에서 나타난 액수는 농산물 협상 그룹의 의장단 초안과는 달리 우리 나라가 개발도상국의 개발목적과 구조조정에 관련된 정책보조 등 대부분의 정책을 허용대상으로 분류하여 <표 3-5>에 계산한 결과이다.

만약 의장초안 내용이 비교적 엄격히 적용되는 경우 정부재정지출을 통한 농업보조금의 감축대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경우에 감축되어야 할 대상정책들에 <표 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곡관리기금 및 농안기금의 결손액과 영농자금, 농기계 구입자금 등이 포함됨에 따라 감축대상 보조금은 상당히 늘어나게 된다 <표 3-8>.

표 3-5 의장 초안의 정책구분과 한국 C/L상의 정책구분 비교

의 장 초 안	한 국 의 C/L
<p>1. 허용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과 농촌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적 성격의 일반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지도, 교육, 훈련, 검사</li> <li>· 병충해 방제</li> <li>· 유통 및 판매촉진 등</li> </ul> </li> <li>- 환경 및 토양보전정책</li> <li>- 자원전환 및 은퇴지원 정책</li> <li>- 재해복구, 작물보험</li> <li>- 식량안보 목격의 공공재고 유지</li> <li>- 지역개발 및 소득안정 장치</li> </ul> <p>2. 감축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가격지지</li> <li>-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족불 지급 등</li> </ul> </li> <li>- 생산요소 및 유통비용의 절감을 위한 시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 및 세제지원 포함</li> </ul> </li> </ul>	<p>1. 의장초안의 허용대상 정책 모두 수용</p> <p>2. 개도국 우대조치 및 NTC 관련정책은 추가로 허용대상으로 분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기계화 관련정책</li> <li>- 구조조정 및 작목전환 보조</li> <li>- 하부구조 개선</li> </ul> <p>3. 개도국의 경우 무역 왜곡효과가 작은 정책은 시장가격지지나 생산요소에 대한 보조일지라도 허용대상으로 분류</p>

표 3-6 C/L상의 국내 농업보조금 내역\*

단위: 백만원

품 목	허용대상보조금	감축대상보조금	총 보 조 금
쌀	685,851	6,250	692,101
보리	16,591	338	16,929
콩	3,271	245	3,516
옥수수	686	31	717
쇠고기	96,203	0	96,203
돼지고기	22,964	0	22,964
닭고기	4,565	0	4,565
계란	5,361	0	5,361
우유	27,324	0	27,324
채소	110,698	2,613	113,311
과실	9,373	1,120	10,493
기타	63,786	4,434	68,220
합계 (%)	1,046,673 (98.6)	15,031 (1.4)	1,061,704 (100.0)

\* 비료가격 지원만 감축대상 보조금으로 분리함.

농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보조금과 농업용수개발 보조금 중 농업용에 관련된 65%만 계산하였음.

표 3-7 감축대상에 포함된 정책

분류	정책
B. 직접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양곡관리기금 결손 · 농안기금 결손</li> </ul>
C. 투입요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료판매가격 차손보조 ·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 · 영농자금 지원 · 농어민 후계자 기금 · 소 입식자금 · 초지조성 및 관리 지원 · 사료작물 종자대 및 사료처리 시설 등 지원 · 양돈입식 · 특용작물류 생산장려금</li> </ul>

### 나. 감축 예상액의 시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UR 협상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5년내에 재정에 의한 국내 농업보조금을 각각 30%, 50%, 70%씩 감축하게 되는 가상적인 시나리오하에서 농업보조금이 얼마나 감축될 것인가를 계산한 결과가 <표 3-9>에 나타나 있다.

표 3-8 의장초안에 의해 계산된 국내 농업보조금 내역\*

단위:백만원

품 목	허용대상 보조금	감축대상 보조금	총 보조금
쌀	427,294	264,807	692,101
보리	1,984	14,945	16,929
콩	475	3,041	3,516
옥수수	589	128	717
쇠고기	68,387	27,816	96,203
돼지고기	22,148	816	22,964
닭고기	4,376	189	4,565
계란	5,149	212	5,361
우유	20,868	6,456	27,324
채소	99,997	13,314	113,311
과실	6,831	3,662	10,493
기타	55,935	12,285	68,220
합계 (%)	714,033 (67.3)	347,671 (32.7)	1,061,704 (100.0)

\* 국내외 가격차에 따른 시장가격 지지는 정부재정 지출요인이 아니므로 제외되었음.

표 3-9 시나리오별 보조금 감축 예상(1988년 기준)\*

단위:억원

	30% 감축		50% 감축		70% 감축	
NTC	없음	쌀	없음	쌀	없음	쌀
총감축액	1,043	249	1,738	414	2,433	580
연간 감축액	209	50	348	83	487	116

\* 1988년도 총감축대상 보조금은 3,477억원임.

<표 3-9>는 우리 나라가 NTC로 선정한 15개 품목 중 한 품목도 NTC를 인정받지 못할 경우와 쌀 하나만 NTC로 인정받는 경우로 나누어 계산한 것으로서 NTC 인정을 전혀 못 받게 될 경우에는 향후 5년 내에 1,043~2,433억원을 감축해야 되며, 쌀 하나만 NTC로 인정받게 되는 경우에는 5년내에 249~580억원의 농업보조금이 감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1988년 양곡관리기금 결손액이 2,533억원이었던 것에 비하여 1989년, 1990년에는 양곡수매의 정치성으로 말미암아 4,356억원 및 7,000억원(예상치)으로 급증하고, 기타 보조금이 농림수산예산서 기준으로 1.57배 및 1.52배 증가하였음을 감안할 때 1989년, 1990년의 총감축대상보조금은 각각 5,837억원과 8,434억원이 되어 이 중 1988년 총감축대상보조금 3,477억원을 상회하는 2,360억원과 4,957억원이 각각 1989년 및 1990년 보조금에서 삭감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UR협상이 타결되는 첫 해에 1990년 보조금 중 감축액인 4,957억원과 협상결과에 따라 결정될 1988년 총농업보조금 중 연간 감축액 50~487억원을 더한 5,007~5,444억원이 감축되고, 그 이후부터는 4년간 매년 50~487억원이 감축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감축되는 보조금이 농림수산 재정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되어서는 안되며, 이를 허용대상이 되는 정책부분으로 전환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 第 4 章

### 農林水產 財政의 運用方向

농림수산 재정의 향후 운용방향은 농림수산업과 농어촌의 변화, 그리고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향이 먼저 제시된 후에 이 새로운 정책방향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 1. 與件 變化와 政策方向

농림수산을 둘러싼 여건변화는 대외적으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진전에 따라 수입개방의 확대가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고, 지금까지 정부가 주어 왔던 각종 보조금, 특히 농산물가격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 주기 위한 정책보조나 생산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한 재정 및 금융보조의 축소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국제화·경쟁화 시대에 맞는 농업체제의 구축이 없이는 산업으로서 농림수산업의 존립이 위협 받게 될 것이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도시화 추세에 따른 농어촌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노령화·부녀화 추세가 계속됨에 따라 농업기계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이를 가능케 할 농업구조의 혁신이 요망되고 있으며, 국민소득 증대에 따른 농수산물 수요 패턴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

되고 있어 수요 변화에 부응하는 농수산업의 상업화·전문화가 농어가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도농간의 소득 및 개발격차에 따른 상대적 불만과 각종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욕구증대를 수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의 투입이 절실히 요망되고 있다.

이와 같은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 속에서 향후 농림수산정책의 방향은 산업으로서 농림수산업이 국제화시대에 경쟁력을 갖추는 데 목표의 우선 순위를 두고, 종래의 현실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세분화나 가격지지, 부채 문제 해결 등 단기적 대응 중심에서 구조개선과 능률성 제고, 자생력 확보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농업의 구조개선은 최소한의 규모확대와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기술개발과 자본투자의 집중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와 연계되어야 하며, 전문화·상업화 시대의 농업을 이끌어 갈 생산주체인 전문농업인력이 농촌에 정주하면서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농촌지역이 농민의 삶의 공간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지역사회로 정비되어야 한다. 또한 새로운 경쟁화 시대에 적응할 수 없는 농어민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정책을 과감히 도입함으로써 구조개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 2. 政府 役割의 再定立

이상과 같은 농림수산정책의 방향하에서 정부의 역할과 민간의 역할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즉, 자율적인 시장경쟁을 통한 가격형성과 자원배분의 촉진, 수요에 부응하는 작목개발과 선택은 개별 농가나 자생적 농민단체에 의하여 이룩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시장의 자율성을 해치는 각종 제도를 개선하며, 지금까지 농림수산정책의 주류를 이루어 왔던 시장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시장원리에 맡길 수 없는 구조조정, 기술혁신의 촉진과 연구개발투자 및 인력개발, 유통정보 제공과

시장의 근대화 등 농림수산관련 기본투자와 사회간접시설 확충에 주력하면서 농어촌환경 개선과 사회보장제도의 확대 등을 통하여 새로운 여건 변화와 정책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농어가에 대한 복지정책 수행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 3. 農林水產 財政運用의 改善方向

정부의 역할이 재정립됨에 따라 농림수산 재정운용의 기본방향도 다음과 같이 변화되어야 한다.

첫째, 농림수산 부문에 사용가능한 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투자재원의 재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 전체로 볼 때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요구와 각계 각종의 복지수요 증대,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수요 증대, 국방비·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의 비중 등으로 농림수산 부문 이외의 재정수요 증가와 경합이 불가피한 상태하에서 농림수산 부문의 지원예산이 대폭적으로 증가될 수 있는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여건이므로 확보가능한 예산범위내에서 투자재원을 향후 농정의 기본방향과 일치하도록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지금까지 국내보조정책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오고 있는 추곡수매정책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중곡가제 실시로 인한 양특적자의 누적을 정부재정에서 보전하는 것이 1989년의 경우 농림수산부 사업비 예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정치권에 의하여 수매가 인상과 수매량 확대가 계속될 경우에는 농림수산부문의 재정규모가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농업발전의 장기적 목표인 구조조정과 기반조성 등에 투입될 수 있는 재원의 제약을 가져올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UR협상의 결과에 따라서는 지금까지의 수매정책 유지가 어렵게 될 것이며, 향후 한국농업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제한된 재정

규모하에서 더 이상 현재의 양특적자규모를 이끌어 갈 수는 없다.

또한 정부수매를 통하여 농민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80kg 가마당 8천 원~1만원선인데 비하여 가마당 양특적자는 3만7천원에서 6만6천원에 이르고 있어 (1989년의 경우 수매가와 산지미가의 차이는 통일계의 경우 8,006원, 일반계의 경우 9,846원이었고, 수매가와 방출가의 차액과 기타 제비용을 합한 가마당 결손액은 통일계가 6만6천원, 일반계가 3만 7천원이었음). 현행 수매제도가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주는 혜택에 비하여 정부의 재정부담이 지나치게 과중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의 수매량을 조정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재정여유분을 유통시설이나 저장시설 부문의 투자로 전환하도록 하여야 한다.<sup>1)</sup> 정부가 수매량을 줄일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축소된 물량만큼을 농민이 저장·유통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곧 수매에 따른 재정적자가 정부에서 농민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매량 축소에 따른 재정여유분을 쌀 생산지의 군 단위에 현대식 저장·가공시설을 설치해 줌으로써 지역농민 스스로가 저장과 출하조정을 가능도록 해 주어야 한다. 보다 더 효과적인 지원방법은 단순한 저장시설이 아니라 생산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수확후 저장·가공단계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 단위의 라이스 센타 설립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곧 생산 코스트의 절감을 가져와 추곡수매의 경우보다 농민의 실질적 혜택이 증가될 수도 있으며,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영농의 규모화와 경쟁력 있는 생산체계의 지원이라는 목표와도 부합된다.

셋째,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지역농정은 각 개별지역의 특징에 맞도록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농업·농촌 정책에서

1)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점은 지금까지 추곡수매 관련예산의 태반이 추경에 반영되어 왔는데, 수매량 축소로 추경이 설정되지 않게 되면 농림수산부문의 예산이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정부는 이의 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축소되는 부문만큼의 재원을 여타 농림수산부문의 투자재원으로서 일반예산에 반영시켜야만 한다는 점이다.

벗어나 지역 단위의 농정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곧 농림수산 재정의 운용에 있어서도 중앙부처인 농림수산부와 지역농정의 담당기관간의 역할 분담과 함께 그에 따른 재정의 배분이 동반되어야 함을 뜻한다. 현행의 행정조직으로 보아 지역농정의 실질적 주체는 도단위의 진흥원이나 농촌지도소가 세부시책 수행의 일선기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 이들 기관의 사업비 예산운용은 내무부 행정기관인 시·군의 기관장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시장·군수가 농업에 관한 관심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 지역농업의 발전이 좌우된다. 따라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여부, 지역농업발전에 관한 농림수산부 일선 공무원들의 의지가 내무행정기관의 예산제약에 의하여 실행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폐단이 지역에 따라서는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역단위의 시험연구 및 지도사업이 원활히 수행되기 위해서는 하부조직인 도단위 진흥원이나 시·군지도소의 사업비예산이 농업진흥청 예산 속에 확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만 지역농정이 독자성을 갖고 지역 수요에 부응하는 농업정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국제화 시대에 경쟁력을 갖춘 농업발전은 연구개발과 기술보급, 그리고 의욕적인 농업인력의 육성에 있다고 볼 때 이 분야에 대한 재정투입이 대폭 증가되어야 한다. 현수준의 연구인력이나 시험장시설로는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연구나 개방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새롭게 요구되는 해외 농산물에 관한 정보수집 및 연구가 불가능하며, 나아가 지역 단위의 시험연구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1989년도의 경우 농업 관련 연구 및 기술보급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농진청의 예산이 전체 농림수산 부문 예산의 1.6%에 불과하다는 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다섯째, 한국 농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생산기반에 대한 투자가 시급한 것은 말할나위가 없으나,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투입하기 위해서는 각종 생산기반 투자도 선별적으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투

입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설정될 농업진흥구역만은 투자가 우선적으로 행해져야 할 것이다.

여섯째, 지금까지 관심의 대상이 되어오지 못한 수산·산림분야의 재원배분에 있어서도 투자의 우선순위가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수산의 경우 지금까지 주로 어항·어로시설이나 어민의 부채경감에 치중되어 왔던 재원투입을 앞으로는 수산자원의 조성과 해외어장의 확보를 위한 해외협력부문의 지원, 그리고 연근해 수산자원의 고갈을 막기 위한 불법어획 방지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의 확보, 어선세력의 조정에 재원투입을 보다 강화해 나가야 한다. 산림분야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조림 및 육림에 중점을 두어 오던 것을 산지이용과 휴양림 육성 등 산림과 산지의 경제적 이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쪽으로 재원 배분을 재조정해야 한다. 특히, 산림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林道의 설치에는 최우선적으로 재정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향후 농림수산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정부가 당면한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재정을 투입할 때에는 그것이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데 단편적인 효과만을 가져오는 반면에 그 결정으로 인하여 재원투입이 관성적으로 행해짐에 따라 농림수산 전체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정책 결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즉, 농어가부채 경감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었다고 하여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그 법에 따른 예산집행이 매년 수천억원씩 계속해서 지출됨에 따라 한정된 재정에 압박요인이 되는 반면, 개별농가에 대한 혜택은 농민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며, 농민내에서의 형평성·정의성 문제를 제기시키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재정지원이 필요한 현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지원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성격인가의 여부와 계속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경우에 그 지원이 장기적인 농림수산정책 방향에 부합되는 것인가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부표 1 농림수산부 예산의 항별·목별 분류

단위: 백만원

	1980							
	인건비 및 물건비	경상 이전	자본 지출	용자 및 출자	보 채 전 원	정부내부 지 출	기타	합계
식량증산	566	1,389	4,124	1,400	0	0	0	7,479
종자공급	805	0	856	0	0	1,110	0	2,771
농업기계화	0	0	3,644	0	0	20,198	0	23,842
농업용수개발	365	32	49,659	15,211	360	1,227	0	66,854
생산기반확충	198	717	23,670	0	19	114	0	24,718
대단위농업종합개발	0	3,378	41,501	0	0	34	0	44,913
유통개선	171	2	3,278	1,400	0	8,000	0	12,851
농특사업	992	848	7,611	0	0	0	0	9,451
축산사업	3,289	1,122	1,198	0	0	348	0	5,957
농업개발	144	5,197	75	12,500	0	485	0	18,401
농촌소득원개발	0	0	0	0	0	0	0	0
농촌지역종합개발	0	0	0	0	0	0	0	0
방조제축조	0	0	0	0	0	0	0	0
농업행정	830	1,136	69	0	0	0	0	2,035
농수산통계	7,091	21	256	0	0	0	0	7,368
농산물검사	5,581	0	266	0	0	0	0	5,847
농업공무원교육	267	0	40	0	0	0	0	307
양곡기금 및 비료계정	0	0	0	0	0	0	0	0
합계	20,299	13,842	136,247	30,511	379	31,516	0	232,794

	1981							
	인건비 및 물건비	경상 이전	자본 지출	융자 및 출자	보 채 전 원	정부내부 지 출	기 타	합 계
식량증산	881	15,775	82,036	1,400	0	0	0	100,092
종자공급	1,041	0	527	0	0	1,500	0	3,068
농업기계화	0	0	8,658	0	0	25,181	0	33,839
농업용수개발	431	84	71,146	27,049	575	1,889	0	101,174
생산기반확충	214	874	35,075	0	27	144	0	36,334
대단위농업종합개발	0	14,967	75,505	0	0	0	0	90,472
유통개선	206	2	7,138	0	0	0	0	7,346
농특사업	1,225	2,536	6,218	0	0	0	0	9,979
축산사업	3,970	1,193	1,146	0	0	429	0	6,738
농업개발	192	6,130	41	14,200	0	940	0	21,503
농촌소득원개발	0	0	0	0	0	0	0	0
농촌지역종합개발	0	0	0	0	0	0	0	0
방조제축조	0	0	0	0	0	0	0	0
농업행정	1,538	1,327	45	0	0	0	0	2,910
농수산통계	8,916	43	150	0	0	0	0	9,109
농산물검사	6,965	15	281	0	0	0	0	7,261
농업공무원교육	344	0	19	0	0	0	0	363
양곡기금 및 비료계정	0	0	0	0	0	0	0	0
합계	25,923	42,946	287,985	42,649	602	30,083	0	430,188

부표 1 농림수산부 예산의 항별·목별 분류(계속)

	1982							
	인건비 및 물건비	경상 이전	자본 지출	융자 및 출자	보전 재원	정부내부 지출	기타	합계
식량증산	1,134	3,120	5,959	0	0	0	0	10,213
종자공급	1,267	0	613	0	0	2,317	0	4,197
농업기계화	0	0	9,619	0	0	28,317	0	37,936
농업용수개발	463	3,050	70,751	25,824	616	3,856	0	104,560
생산기반확충	254	1,023	54,968	420	29	171	0	56,865
대단위농업종합개발	0	22,541	72,573	0	0	139	0	95,253
유통개선	288	42	10,512	0	0	0	0	10,842
농특사업	1,520	2,168	4,921	0	0	0	0	8,609
축산사업	4,916	1,349	1,649	0	0	520	0	8,434
농업개발	163	7,152	0	25,036	0	6,304	0	38,655
농촌소득원개발	0	0	0	0	0	0	0	0
농촌지역종합개발	0	0	0	0	0	0	0	0
방조제축조	0	0	0	0	0	0	0	0
농업행정	1,247	1,660	36	0	0	0	0	2,943
농수산통계	11,131	28	171	0	0	0	0	11,330
농산물검사	8,658	0	223	0	0	0	0	8,881
농업공무원교육	412	0	18	0	0	0	0	430
양곡기금 및 비료계정	0	0	0	0	0	0	0	0
합계	31,453	42,133	232,013	51,280	645	41,624	0	399,148

	1983							
	인건비및 물건비	경상 이전	자본지출	융자 및 출자	보전원	정부내부자	기타	합계
식량증산	1,284	5,597	5,656	0	0	0	82	12,619
종자공급	1,635	0	488	0	0	1,693	44	3,860
농업기계화	0	264	6,436	0	0	20,049	0	26,749
농업용수개발	620	8,953	101,445	30,034	542	7,366	46	149,006
생산기반확충	0	2,085	51,402	420	2	306	12	54,227
대단위농업종합개발	0	25,739	74,610	0	0	0	0	100,349
유통개선	100	3,030	7,000	0	0	9	0	10,139
농특사업	1,367	0	3,703	0	0	0	64	5,134
축산사업	4,978	487	452	0	0	0	135	6,052
농업개발	399	3,835	0	29,439	0	5,000	50	38,723
농촌소득원개발	0	0	0	0	0	0	0	0
농촌지역종합개발	0	0	0	0	0	0	0	0
방조제축조	0	0	0	0	0	0	0	0
농업행정	1,107	1,782	8	0	0	0	162	3,059
농수산통계	12,022	29	409	0	0	0	284	12,744
농산물검사	9,093	0	109	0	0	0	326	9,528
농업공무원교육	429	0	24	0	0	0	9	462
양곡기금 및 비료계정	0	0	0	0	0	0	0	0
합계	33,034	51,801	251,742	59,893	544	34,423	1,214	432,651

부표 1 농림수산부 예산의 항별·목별 분류(계속)

	1984							
	인건비 및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출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	정부내부지출	기타	합계
식량증산	1,261	3,558	6,081	0	0	0	82	10,982
종자공급	1,311	0	597	0	0	1,680	47	3,635
농업기계화	0	390	6,293	0	0	0	0	6,683
농업용수개발	577	3,514	113,976	30,034	549	7,972	46	156,668
생산기반확충	0	11,061	55,633	1,947	2	310	0	68,953
대단위농업종합개발	0	29,361	81,716	0	0	0	0	111,077
유통개선	100	72	9,071	0	0	24	0	9,267
농특사업	1,385	0	3,520	0	0	0	69	4,974
축산사업	4,901	622	631	0	0	0	130	6,284
농업개발	412	4,916	0	26,600	0	0	50	31,978
농촌소득원개발	0	0	0	0	0	0	0	0
농촌지역종합개발	0	0	0	0	0	0	0	0
방조제축조	0	0	0	0	0	0	0	0
농업행정	984	1,626	42	0	0	0	168	2,820
농수산통계	12,398	29	77	0	0	0	293	12,797
농산물검사	9,506	0	190	0	0	0	311	10,007
농업공무원교육	455	0	7	0	0	0	11	473
양곡기금 및 비료계정	0	330,400	0	0	0	0	0	330,400
합계	33,290	385,549	277,834	58,581	551	9,986	1,207	766,998

	1985							
	인건비 및 물건비	경상 이전	자본 지출	융자 및 출자	보 재 원	정부내부 지출	기타	합계
식량증산	1,682	458	8,375	0	0	0	100	10,615
종자공급	1,411	0	810	0	0	1,827	47	4,095
농업기계화	0	354	6,324	0	0	0	0	6,678
농업용수개발	670	14,703	91,152	25,784	549	8,667	47	141,572
생산기반확충	0	8,179	54,150	2,797	0	0	0	65,126
대단위농업종합개발	0	28,793	73,150	0	0	0	0	101,943
유통개선	641	290	9,490	0	0	63	0	10,484
농특사업	1,515	0	2,472	0	0	0	72	4,059
축산사업	5,399	522	1,438	0	0	0	126	7,485
농업개발	423	4,124	0	80,000	0	0	49	84,686
농촌소득원개발	0	0	22,497	956	0	0	0	23,453
농촌지역종합개발	0	0	0	0	0	0	0	0
방조제축조	0	0	0	0	0	0	0	0
농업행정	1,159	1,323	15	0	0	0	172	2,669
농수산통계	13,239	32	902	0	0	0	307	14,480
농산물검사	9,816	0	391	0	0	0	310	10,517
농업공무원교육	530	0	20	0	0	0	12	562
양곡기금 및 비료계정	0	496,200	0	0	0	0	0	496,200
합계	36,485	555,068	271,186	109,537	549	10,557	1,242	984,624

부표 1 농림수산부 예산의 항별·목별 분류(계속)

	1986							
	인건비 및 물건비	경상 이전	자본 지출	융자 및 출자	보전 재원	정부내부 지출	기타	합계
식량증산	2,264	458	7,677	0	0	0	104	10,503
종자공급	1,576	0	1,290	0	0	1,498	51	4,415
농업기계화	0	326	5,941	20,000	0	0	0	26,267
농업용수개발	1,241	4,233	98,801	29,166	626	9,344	49	143,460
생산기반확충	0	4,476	93,131	3,224	0	0	0	100,831
대단위농업종합개발	0	28,053	74,550	0	0	0	0	102,603
유통개선	1,288	703	7,050	0	0	20,054	0	29,095
농특사업	1,679	0	2,616	0	0	0	77	4,372
축산사업	6,396	760	1,330	0	0	0	133	8,619
농업개발	454	16,007	130	99,000	0	20,000	50	135,641
농촌소득원개발	4	0	21,638	4,913	0	0	0	26,555
농촌지역종합개발	0	0	0	0	0	0	0	0
방조제축조	0	0	0	0	0	0	0	0
농업행정	1,298	1,665	13	0	0	0	186	3,162
농수산통계	14,725	41	348	0	0	0	338	15,452
농산물검사	10,726	0	997	0	0	0	340	12,063
농업공무원교육	580	0	26	0	0	0	12	618
양곡기금 및 비료계정	0	350,000	0	0	0	0	0	350,000
합계	42,231	406,722	315,538	156,303	626	50,896	1,340	973,656

	1987							
	인건비및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융자및자	보전재원	정부내부지출	기타	합계
식량증산	2,573	458	4,972	0	0	0	124	8,127
종자공급	1,687	658	0	0	0	1,352	54	3,751
농업기계화	0	1,201	6,864	0	0	0	0	8,065
농업용수개발	1,074	9,942	107,075	27,451	604	8,701	51	154,898
생산기반확충	0	2,300	108,474	4,817	0	0	0	115,591
대단위농업종합개발	0	28,102	51,222	0	0	0	0	79,324
유통개선	490	1,203	5,310	0	0	25,290	41	32,334
농특사업	1,328	0	2,627	0	0	0	39	3,994
축산사업	7,049	927	1,213	0	6,397	0	139	15,725
농업개발	439	12,663	0	109,200	0	60,000	49	182,351
농촌소득원개발	2	0	33,800	15,507	0	0	0	49,309
농촌지역종합개발	3	0	7,437	0	0	125,000	0	132,440
방조제축조	0	0	27,310	920	0	0	0	28,230
농업행정	1,442	2,124	15	0	0	0	222	3,803
농수산통계	15,630	41	480	0	0	0	362	16,513
농산물검사	12,055	0	764	0	0	0	356	13,175
농업공무원교육	626	0	32	0	0	0	15	673
양곡기금 및 비료계정	0	275,000	0	0	0	0	0	275,000
합계	44,398	334,619	357,595	157,895	7,001	220,343	1,452	1,123,303

부표 1 농림수산부 예산의 항별·목별 분류(계속)

	1988							
	인건비 및 물건비	경상 이전	자본 지출	융자 및 출자	보전 재원	정부내부 지출	기타	합계
식량증산	2,901	492	10,434	0	0	0	138	13,965
종자공급	1,938	0	747	0	0	966	68	3,719
농업기계화	22	1,275	12,140	50,000	0	5,000	0	68,437
농업용수개발	1,153	62,030	114,328	28,563	556	10,440	52	217,122
생산기반확충	0	2,755	148,496	6,539	0	0	0	157,790
대단위농업종합개발	0	41,227	62,267	0	0	0	0	103,494
유통개선	525	1,978	5,007	5,000	0	50,000	41	62,551
농특사업	1,515	2,000	2,544	0	0	0	48	6,107
축산사업	7,829	41,098	4,147	20,000	0	0	150	73,224
농업개발	510	102,951	801	149,400	0	25,000	49	278,711
농촌소득원개발	2	0	49,848	30,999	0	0	0	80,849
농촌지역종합개발	12	0	1,200	0	0	169,000	0	170,212
방조제축조	0	0	25,584	1,320	0	0	0	26,904
농업행정	1,837	3,078	48	0	0	0	237	5,200
농수산통계	17,909	43	548	0	0	0	416	18,916
농산물검사	13,813	0	1,384	0	0	0	397	15,594
농업공무원교육	708	0	65	0	0	0	21	794
양곡기금 및 비료계정	0	538,400	0	0	0	0	0	538,400
합계	50,674	797,327	439,588	291,821	556	260,406	1,617	1,841,989

	1989							
	인건비 및 물건비	경상 이전	자본 지출	용자 및 출자	보전 재원	정부내부 지출	기타	합계
식량증산	3,400	465	6,853	0	0	0	143	10,861
종자공급	3,001	0	880	0	0	0	0	3,881
농업기계화	10	1,169	22,016	49,400	0	0	0	72,595
농업용수개발	1,250	90,813	168,334	0	479	10,925	52	271,853
생산기반확충	0	2,979	187,031	0	0	0	0	190,010
대단위농업종합개발	0	45,502	48,556	0	0	0	0	94,058
유통개선	157	5,972	10,574	36,000	0	20,000	42	72,745
농특사업	1,778	2,095	2,816	0	0	0	50	6,739
축산사업	9,888	3,691	3,551	0	0	0	157	17,287
농업개발	101	265,743	5	120,000	0	5,000	50	390,899
농촌소득원개발	3	0	58,767	38,792	0	0	0	97,562
농촌지역종합개발	12	50	1,200	0	0	125,000	0	126,262
방조제축조	0	0	29,848	0	0	0	0	29,848
농업행정	2,342	2,994	52	0	0	0	253	5,641
농수산통계	20,635	43	660	0	0	0	424	21,762
농산물검사	16,656	0	976	0	0	0	404	18,036
농업공무원교육	830	0	58	0	0	0	22	910
양곡기금 및 비료계정	0	951,200	0	0	0	0	0	951,200
합계	60,063	1,372,716	542,177	244,192	479	160,925	1,597	2,382,149

부표 1 농림수산부 예산의 항별·목별 분류(계속)

	1990							
	인건비 및 물건비	경상 이전	자본 지출	융자 및 출자	보 재 전 원	정부내부 지 출	기 타	합 계
식량증산	4,344	386	7,538	0	0	0	160	12,428
종자공급	2,614	0	911	0	0	540	76	4,141
농업기계화	9	840	27,559	70,000	0	0	0	98,408
농업용수개발	1,461	96,698	126,135	0	476	7,260	53	232,083
생산기반확충	200	4,554	230,482	12,000	0	0	0	247,236
대단위농업종합개발	0	36,081	38,549	0	0	0	0	74,630
유통개선	176	7,499	10,501	5,000	0	20,000	43	43,219
농특사업	2,123	1,595	3,127	0	0	0	54	6,899
축산사업	11,619	3,026	3,127	10,000	0	0	170	27,942
농업개발	231	203,556	0	110,000	0	5,000	51	318,838
농촌소득원개발	3	0	82,557	26,811	0	0	0	109,371
농촌지역종합개발	21	0	4,280	0	0	200,228	0	204,529
방조제축조	0	0	27,177	0	0	0	0	27,177
농업행정	2,869	2,982	18	0	0	0	271	6,140
농수산통계	29,615	43	0	461	0	0	478	30,597
농산물검사	21,047	0	925	0	0	0	459	22,431
농업공무원교육	990	0	44	0	0	0	24	1,058
양곡기금 및 비료계정	0	880,000	0	0	0	0	0	880,000
합계	77,322	1,237,260	562,930	234,272	476	233,028	1,839	2,347,127

부표 2 수산청 예산의 세항별·목별 분류

단위:백만원

	1980							
	인건비 및 물건비	경 이 상 전	자 본 지 출	융자 및 출 자	보 재 전 원	정부내부 지 출	기 타	합 계
수산및어업기술훈련	210	825	29	0	0	0	0	1,064
증식사업	14	0	393	0	0	0	0	407
여항, 어로시설	122	0	11,206	0	0	46	0	11,374
내수면개발	595	24	21	0	0	0	0	640
원양어업개발	61	0	300	0	0	21	0	382
자원조성	7	7	929	0	0	0	0	943
수산물유통	30	0	966	0	0	0	0	996
수산자금지원	0	2,155	0	0	0	0	0	2,155
어업지도	2,340	1,031	3,012	0	0	0	0	6,383
해역별거점항	0	0	0	0	0	0	0	0
농어가부채대책	0	0	0	0	0	0	0	0
수산행정	2,922	768	96	0	0	0	0	3,786
수산시험연구	2,338	0	322	0	0	0	0	2,660
수산개발	0	0	0	8,895	0	0	0	8,895
합계	8,639	4,810	17,274	8,895	0	67	0	39,685

부표 2 수산청 예산의 세항별·목별 분류(계속)

	1981							
	인건비 및 물건비	경상 이전	자본 지출	융자 및 출자	보 재 원	정부내부 지 출	기타	합계
수산및어업기술훈련	265	1,038	34	0	0	0	0	1,337
증식사업	17	0	502	0	0	7	0	526
어항, 어로시설	169	0	14,578	0	0	89	0	14,836
내수면개발	627	27	151	0	0	0	0	805
원양어업개발	77	0	600	26	0	0	0	703
자원조성	10	7	1,252	0	0	0	0	1,269
수산물유통	31	0	687	0	0	0	0	718
수산자금지원	0	2,468	0	0	0	500	0	2,968
어업지도	3,195	1,328	1,116	0	0	0	0	5,639
해역별거점항	0	0	0	0	0	0	0	0
농어가부채대책	0	0	0	0	0	0	0	0
수산행정	3,527	882	258	0	0	0	0	4,667
수산시험연구	2,963	0	230	0	0	0	0	3,193
수산개발	0	0	0	10,240	0	0	0	10,240
합계	10,881	5,750	19,408	10,266	0	596	0	46,901

	1982							
	인건비 및 물건비	경상 이전	자본 지출	융자 및 출자	보 재 원	정부내부 지 출	기타	합계
수산및어업기술훈련	318	1,434	23	0	0	0	0	1,775
증식사업	47	0	534	0	0	4	0	585
어항, 어로시설	183	48	18,508	0	0	101	0	18,840
내수면개발	600	49	136	0	0	0	0	785
원양어업개발	104	0	694	0	0	31	0	829
자원조성	21	0	3,686	0	0	0	0	3,707
수산물유통	44	0	666	0	0	0	0	710
수산자금지원	0	1,434	0	0	0	0	0	1,434
어업지도	3,714	1,590	463	0	0	0	0	5,767
해역별거점항	0	0	0	0	0	0	0	0
농어가부채대책	0	0	0	0	0	0	0	0
수산행정	3,997	1,093	105	0	0	0	0	5,195
수산시험연구	3,537	0	630	0	0	0	0	4,167
수산개발	0	0	0	10,949	0	0	0	10,949
합계	12,565	5,648	25,445	10,949	0	136	0	54,743

부표 2 수산청 예산의 세항별·목별 분류(계속)

	1983							
	인건비 및 물건비	경상 이전	자본 지출	용자 및 출자	보 전 원	정부내부 지출	기타	합계
수산및어업기술훈련	292	1,280	17	0	0	0	12	1,601
증식사업	38	0	509	0	0	0	10	557
어항, 어로시설	83	1,228	19,102	0	0	220	0	20,633
내수면개발	681	0	21	0	0	0	0	702
원양어업개발	307	0	852	0	0	32	0	1,191
자원조성	0	10	4,713	0	0	0	0	4,723
수산물유통	24	0	539	0	0	0	33	596
수산자금지원	533	333	0	0	0	0	0	866
어업지도	4,099	1,772	259	0	0	0	51	6,181
해역별거점항	0	0	0	0	0	0	0	0
농어가부채대책	0	0	0	0	0	0	0	0
수산행정	3,201	64	42	0	0	0	208	3,515
수산시험연구	5,064	0	336	0	0	0	105	5,505
수산개발	0	0	0	12,362	0	0	0	12,362
합계	14,322	4,637	26,390	12,362	0	252	419	58,432

	1984							
	인건비 및 물건비	경상 이전	자본 지출	융자 및 출자	보 재 원	정부내부 지 출	기타	합계
수산 및 어업 기술 훈련	296	1,012	21	0	0	0	12	1,341
증식 사업	0	0	644	0	0	21	0	665
어항, 어로 시설	80	898	16,070	0	0	285	0	17,333
내수면 개발	833	50	61	0	0	0	0	944
원양 어업 개발	42	0	527	0	0	0	0	569
자원 조성	1	11	6,060	0	0	0	0	6,072
수산 물류 통	9	0	503	0	0	0	35	547
수산 자금 지원	0	1,218	0	0	0	0	0	1,218
어업지도	4,057	1,773	194	0	0	0	47	6,071
해역별 거점 항	0	0	6,831	0	0	0	0	6,831
농어가 부채 대책	0	0	0	0	0	0	0	0
수산 행정	3,217	83	130	0	0	0	222	3,652
수산시험연구	5,190	0	265	0	0	0	112	5,567
수산개발	0	0	0	15,918	0	0	0	15,918
합계	13,725	5,045	31,306	15,918	0	306	428	66,728

부표 2 수산청 예산의 세항별·목별 분류(계속)

	1985							
	인건비 및 물건비	경상 이전	자본 지출	용자 및 출자	보 재 전 원	정부내부 지 출	기타	합계
수산및어업기술훈련	323	792	13	0	0	0	12	1,140
증식사업	0	25	817	0	0	21	10	873
어항, 어로시설	26	888	15,261	0	0	283	0	16,458
내수면개발	724	50	371	0	0	0	0	1,145
원양어업개발	34	0	414	0	0	0	0	448
자원조성	0	13	6,586	0	0	0	0	6,599
수산물유통	12	0	685	0	0	0	32	729
수산자금지원	0	951	0	0	0	0	0	951
어업지도	3,410	1,773	1,223	0	0	0	40	6,446
해역별거점항	0	0	8,660	0	0	0	0	8,660
농어가부채대책	0	0	0	0	0	0	0	0
수산행정	3,552	78	488	0	0	0	237	4,355
수산시험연구	5,913	0	1,610	0	0	12	113	7,648
수산개발	0	0	0	19,430	0	0	0	19,430
합계	13,994	4,570	36,128	19,430	0	316	444	74,882

	1986							
	인건비 및 물건비	경상 이전	자본 지출	융자 및 출자	보 재 원	정부내부 지출	기타	합계
수산및어업기술훈련	353	739	12	0	0	0	14	1,118
증식사업	1	4,064	965	0	0	15	0	5,045
어항, 어로시설	87	7,042	23,562	0	0	326	0	31,017
내수면개발	553	50	371	0	0	0	0	974
원양어업개발	35	0	368	0	0	0	0	403
자원조성	21	13	8,360	0	0	0	0	8,394
수산물유통	45	0	653	0	0	0	32	730
수산자금지원	0	818	0	0	0	0	0	818
어업지도	3,540	3,360	586	0	0	0	45	7,531
해역별거점항	0	0	10,070	0	0	0	0	10,070
농어가부채대책	0	0	0	0	0	0	0	0
수산행정	3,869	84	445	0	0	0	273	4,671
수산시험연구	7,108	0	3,613	0	0	28	112	10,861
수산개발	0	0	0	24,763	0	0	0	24,763
합계	15,612	16,170	49,005	24,763	0	369	476	106,395

부표 2 수산청 예산의 세항별·목별 분류(계속)

	1987							
	인건비 및 물건비	경 이 상 전	자 본 지 출	융자 및 출 자	보 전 재 원	정부내부 지 출	기 타	합 계
수산맞어업기술훈련	389	739	10	0	0	0	14	1,152
증식사업	4	189	929	0	0	14	0	1,136
어항, 어로시설	74	1,057	33,327	0	0	326	0	34,784
내수면개발	554	50	666	0	0	0	0	270
원양어업개발	33	0	260	0	0	0	0	293
자원조성	3	20	9,386	0	0	0	0	9,409
수산물유통	34	0	383	0	0	0	34	451
수산자금지원	0	3,476	0	0	0	0	0	3,476
어업지도	3,534	2,308	2,080	0	0	0	45	7,976
해역별거점항	0	0	10,845	0	0	0	0	10,845
농어가부채대책	0	0	0	0	0	0	0	0
수산행정	4,307	87	146	0	0	0	289	4,829
수산시험연구	7,971	0	4,536	0	0	128	118	12,753
수산개발	0	0	0	25,129	0	0	0	25,129
합계	16,903	7,926	62,568	25,129	0	468	500	113,494

	1988							
	인건비 및 물건비	경상 이전	자본 지출	융자 및 출자	보 재 원	정부내부 지 출	기 타	합 계
수산및어업기술훈련	452	779	1,102	0	0	0	19	2,352
증식사업	4	368	971	0	0	19	0	1,362
여항, 어로시설	148	1,162	30,974	0	0	470	0	32,754
내수면개발	587	50	564	0	0	0	0	1,201
원양어업개발	33	0	0	0	0	0	0	33
자원조성	6	41	10,221	0	0	0	0	10,268
수산물유통	22	0	724	0	0	0	37	783
수산자금지원	0	9,775	257	0	0	0	0	10,032
어업지도	3,876	2,549	2,245	0	0	0	46	8,716
해역별거점항	0	0	11,765	0	0	0	0	11,765
농어가부채대책	0	0	0	0	0	0	0	0
수산행정	4,931	98	273	0	0	0	314	5,616
수산시험연구	9,431	0	3,053	0	0	104	131	12,719
수산개발	0	0	0	25,244	0	0	0	25,244
합계	19,490	14,822	62,149	25,244	0	593	547	122,845

부표 2 수산청 예산의 세항별·목별 분류(계속)

	1989							
	인건비 및 물건비	경상 이전	자본 지출	융자 및 출자	보전 재원	정부내부 지출	기타	합계
수산및어업기술훈련	541	827	692	0	0	0	22	2,082
증식사업	5	457	418	0	0	18	0	898
어항, 어로시설	94	1,175	45,462	0	0	2,578	0	49,309
내수면개발	612	50	56	0	0	0	0	718
원양어업개발	31	0	0	0	0	0	0	31
자원조성	8	71	10,641	0	0	0	0	10,720
수산물유통	5	0	769	0	0	0	0	774
수산자금지원	0	9,669	3,552	0	0	0	0	13,221
어업지도	2,293	3,070	4,867	0	0	0	47	10,277
해역별거점항	0	0	6,118	0	0	0	0	6,118
농어가부채대책	0	15,000	0	0	0	0	0	15,000
수산행정	7,925	105	311	0	0	0	317	8,658
수산시험연구	10,918	0	4,268	0	0	186	135	15,507
수산개발	0	0	0	25,291	0	0	0	25,291
합계	22,432	30,424	77,154	25,291	0	2,782	521	158,604

	1990							
	인건비 및 물건비	경상전	자본지출	융자 및 출자	보 재 원	정부내부 지 출	기타	합계
수산 및 어업 기술 훈련	645	908	858	0	0	0	23	2,434
증식 사업	8	558	78	0	0	14	0	658
어항, 어로 시설	88	1,272	54,167	0	0	0	0	55,527
내수면 개발	700	50	406	0	0	0	0	1,156
원양 어업 개발	29	0	0	0	0	0	0	29
자원 조성	8	302	11,575	0	0	0	0	11,885
수산 물 유통	7	0	479	0	0	0	0	486
수산 자금 지원	0	9,560	4,500	0	0	0	0	14,060
어업지도	2,895	3,384	5,343	0	0	0	49	11,671
해역별 거점 항	0	0	5,035	0	0	0	0	5,035
농어가 부채 대책	0	8,611	0	0	0	0	0	8,611
수산 행정	9,565	119	327	0	0	0	406	10,417
수산시험연구	12,764	0	4,599	0	0	181	147	17,691
수산개발	0	0	0	30,730	0	0	0	30,730
합계	26,709	24,764	87,367	30,730	0	195	625	170,390

부표 3 산림청 예산의 세항별·목별 분류

단위: 백만원

	1980								합 계
	인건비 및 물건비	경 상 이 전	자 본 지 출	용자 및 출 자	보 전 재 원	정부내부 지 출	기 타		
산 립 행 정	1,876	88	14	0	0	0	0		1,978
산 립 보 호	480	76	68	0	0	0	0		624
조 립 및 육 립	104	269	11,071	0	0	1,609	0		13,053
사 방	179	922	14,180	0	0	0	0		15,281
기 술 지 도	37	639	1	0	0	0	0		677
임 업 연 구	2,916	17	390	0	0	0	0		3,323
조 립 및 육 립 *	3,159	7	97	0	0	0	0		3,263
산 립 보 호 *	1,305	19	100	0	0	0	0		1,424
국 유 립 경 영	3,008	77	563	0	0	49	0		3,697
임 도 시 설	44	0	86	0	0	0	0		130
예 비 비	0	0	0	0	0	0	201		201
산 립 개 발	0	0	0	0	0	0	0		0
합 계	13,108	2,114	26,570	0	0	1,658	201		43,651

\* 특별회계임.

	1981							
	인건비 및 물건비	경상 이전	자본 지출	용자 및 출자	보 재 전 원	정부내부 지 출	기 타	합 계
산림행정	2,449	103	49	0	0	0	0	2,601
산림보호	682	112	60	0	0	0	0	854
조림 및 육림	113	697	12,881	0	0	1,618	0	15,309
사방	241	4	15,386	0	0	0	0	15,631
기술지도	9	43	1,220	0	0	0	0	1,272
임도시설	0	0	0	0	0	0	0	0
임업연구	3,505	28	462	0	0	0	0	3,995
조림 및 육림*	3,399	7	43	0	0	0	0	3,449
산림보호*	1,197	18	85	0	0	0	0	1,300
국유림경영	3,583	50	684	0	0	118	0	4,435
임도시설*	47	0	78	0	0	0	0	125
예비비	0	0	0	0	0	0	222	222
산림개발	0	0	0	0	0	0	0	0
합계	15,225	1,062	30,948	0	0	1,736	222	49,193

\* 특별회계임.

부표 3 산림청 예산의 세항별·목별 분류(계속)

	1982								합 계
	인건비 및 물건비	경 상 이 전	자 본 지 출	용자 및 출 자	보 재 원	정부내부 지 출	기 타		
산 림 행 정	3,367	245	10	0	0	0	0	3,622	
산 림 보 호	1,039	240	658	0	0	0	0	1,937	
조 림 및 육 림	146	590	16,634	0	0	1,653	0	19,023	
사 方	309	5	17,258	0	0	0	0	17,572	
기 술 지 도	54	1,292	1	0	0	0	0	1,347	
임 도 시 설	0	0	0	0	0	0	0	0	0
임 업 연 구	4,463	93	1,019	0	0	0	0	5,575	
조 림 및 육 림 *	3,593	8	41	0	0	0	0	3,642	
산 림 보 호 *	1,345	13	154	0	0	0	0	1,512	
국 유 림 경 영	4,200	63	456	0	0	118	0	4,837	
임 도 시 설 *	51	0	21	0	0	0	0	72	
예 비 비	0	0	0	0	0	0	282	282	
산 림 개 발	0	0	0	0	0	0	0	0	0
합 계	18,567	2,549	36,252	0	0	1,771	282	59,421	

\* 특별회계임.

	1983							
	인건비 및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용자 및 출자	보전재원	정부내부자출	기타	합계
산림행정	3,789	654	0	0	0	0	100	4,543
산림보호	1,755	180	15	0	0	0	0	1,950
조림 및 육림	86	409	14,917	0	0	250	11	15,673
사방	216	5	14,642	0	0	0	0	14,863
기술지도	22	1,157	1	0	0	0	0	1,180
임도시설	0	0	0	0	0	0	0	0
임업연구	4,750	34	671	0	0	0	93	5,548
조림 및 육림*	3,199	7	30	0	0	0	0	3,236
산림보호*	678	8	68	0	0	0	0	754
국유림경영	4,248	167	276	0	0	156	244	5,091
임도시설*	47	0	302	0	0	0	0	349
예비비	0	0	0	0	0	0	507	507
산림개발	0	0	0	1,500	0	0	0	1,500
합계	18,790	2,621	30,922	1,500	0	406	955	55,194

\* 특별회계임.

부표 3 산림청 예산의 세항별·목별 분류(계속)

	1984								합 계
	인건비 및 물건비	경 상 이 전	자 본 지 출	용자 및 출 자	보 재 전 원	정부내부 지 출	기 타		
산 림 행 정	3,959	654	39	0	0	0	103	4,755	
산 림 보 호	1,548	475	12	0	0	0	0	2,035	
조 림 및 육 림	82	265	14,226	0	0	234	11	14,818	
사 방	175	0	14,453	0	0	0	0	14,628	
기 술 지 도	25	1,409	0	0	0	0	0	1,434	
임 도 시 설	0	0	0	0	0	0	0	0	
임 업 연 구	4,961	29	1,178	0	0	0	103	6,271	
조 림 및 육 림 *	2,929	5	6	0	0	0	0	2,940	
산 림 보 호 *	619	8	57	0	0	0	0	684	
국 유 림 경 영	4,689	322	276	0	0	0	252	5,539	
임 도 시 설 *	46	0	264	0	0	0	0	310	
예 비 비	0	0	0	0	0	0	277	277	
산 림 개 발	0	0	0	1,500	0	0	0	1,500	
합 계	19,033	3,167	30,511	1,500	0	234	746	55191	

\* 특별회계임.

	1985							
	인건비 및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용자 및 출자	보전재원	정부내부지출	기타	합계
산림행정	4,386	963	44	0	0	0	115	5,508
산림보호	1,839	460	1,833	0	0	0	0	4,132
조림 및 육림	57	262	11,932	0	0	247	15	12,513
사방	143	0	12,910	0	0	0	0	13,053
기술지도	26	1,696	3	0	0	0	0	1,725
임도시설	0	0	992	0	0	0	0	992
임업연구	5,222	38	2,459	0	0	0	102	7,821
조림 및 육림*	2,759	3	20	0	0	0	0	2,782
산림보호*	498	0	8	69	0	0	0	575
국유림경영	4,774	265	534	0	0	0	244	5,817
임도시설*	45	0	510	0	0	0	0	555
예비비	0	0	0	0	0	0	46	46
산림개발	0	0	0	1,500	0	0	0	1,500
합계	19,749	3,687	31,245	1,569	0	247	522	57,019

\* 특별회계임.

부표 3 산림청 예산의 세항별·목별 분류(계속)

	1986								합 계
	인건비 및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	정부내부지출	기타		
산림행정	4,866	730	318	0	0	0	123	6,037	
산림보호	2,058	468	32	0	0	0	0	2,558	
조림 및 육림	88	290	12,853	0	0	272	18	13,521	
사방	111	5	11,916	0	0	0	0	12,032	
기술지도	28	2,014	3	0	0	0	0	2,045	
임도시설	0	0	1,374	0	0	0	0	1,374	
임업연구	5,613	37	3,779	0	0	0	105	9,534	
조림 및 육림*	2,765	6	26	0	0	0	0	2,797	
산림보호*	495	8	76	0	0	0	0	579	
국유림경영	5,223	275	298	0	0	0	252	6,048	
임도시설*	53	100	740	0	0	0	0	893	
예비비	0	0	0	0	0	0	64	64	
산림개발	0	0	0	2,500	0	0	0	2,500	
합계	21,300	3,933	31,415	2,500	0	272	562	59,982	

\* 특별회계임.

	1987								합 계
	인건비 및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	정부내부지출	기타		
산림행정	5,342	747	278	0	0	0	136	6,503	
산림보호	2,444	608	28	0	0	0	0	3,080	
조림 및 육림	89	321	13,785	0	0	285	19	14,499	
사방	94	5	10,440	0	0	0	0	10,539	
기술지도	28	2,780	0	0	0	0	0	2,808	
임도시설	2	0	2,034	0	0	0	0	2,034	
임업연구	6,274	22	1,698	0	0	0	110	8,104	
조림 및 육림*	2,840	6	51	0	0	0	0	2,897	
산림보호*	500	11	96	0	0	0	0	607	
국유림경영	6,261	335	897	0	0	0	265	7,758	
임도시설*	189	160	537	0	0	0	0	886	
국유재산관리	0	0	0	0	0	0	0	0	
예비비	0	0	0	0	0	0	110	110	
산림개발	0	0	0	2,500	0	0	0	2,500	
합계	24,063	4,995	29,844	2,500	0	285	640	62,327	

\* 특별회계임.

부표 3 산림청 예산의 세항별·목별 분류(계속)

	1988							
	인건비 및 물건비	경상 이전	자본 지출	용자 및 출자	보전 재원	정부내부 지출	기타	합계
산림행정	6,315	1,358	894	0	0	0	138	8705
산림보호	4,015	2,419	624	0	0	0	0	7,058
조림 및 육림	97	341	14,523	0	0	277	20	15,258
사방	43	5	11,730	0	0	0	0	11,778
기술지도	32	3,075	401	0	0	0	0	3,508
임도시설	2	0	2,303	0	0	0	0	2,305
임업연구	7,440	15	2,497	0	0	0	130	10,082
조림 및 육림*	4,515	10	123	0	0	0	0	4,648
산림보호*	905	12	494	0	0	0	0	1,411
국유림경영	6,903	361	1,348	0	0	0	302	8,914
임도시설*	600	170	1,478	0	0	0	0	2,248
국유재산관리	998	14	4,544	0	0	0	0	5,556
예비비	0	0	0	0	0	0	58	58
산림개발	0	0	0	3,000	0	0	0	3,000
합계	31,865	7,780	40,959	3,000	0	277	648	84,529

\* 특별회계임.

	1989							
	인건비 및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용자 및 출자	보전재원	정부내부지출	기타	합계
산림행정	7,978	1,549	1,297	0	0	0	150	10,974
산림보호	3,849	4,522	150	0	0	0	0	8,521
조림 및 육림	96	356	14,466	0	0	281	20	15,219
사방	41	5	11,934	0	0	0	0	11,980
기술지도	34	3,359	401	0	0	0	0	3,794
임도시설	2	0	3,464	0	0	0	0	3,466
임업연구	8,482	13	3,434	0	0	0	140	12,069
조림 및 육림*	4,360	10	671	0	0	0	0	5,041
산림보호*	1,101	13	132	0	0	0	0	1,246
국유림경영	8,202	51	1,848	0	0	0	311	10,412
임도시설*	637	159	2,846	0	0	0	0	3,642
국유재산관리	1,377	16	6,652	0	0	0	0	8,045
법정부담금	0	352	0	0	0	0	0	352
예비비	0	0	0	0	0	0	58	58
산림개발	0	0	0	4,500	0	0	0	4,500
합계	36,159	10,405	47,295	4,500	0	281	679	99,319

\* 특별회계임.

부표 3 산림청 예산의 세항별·목별 분류(계속)

	1990								합 계
	인건비 및 물건비	경 상 이 전	자 본 지 출	용자 및 출 차	보 재 전 원	정부내부 지 출	기 타		
산 림 행 정	9,420	1,548	3,116	0	0	0	164	14,248	
산 림 보 호	2,669	5,223	816	0	0	0	0	8,708	
조 림 및 육 림	100	497	16,070	0	0	277	21	16,965	
사 方	51	5	12,793	0	0	0	0	12,849	
기 술 지 도	37	4,786	1,125	0	0	0	0	5,948	
임 도 시 설	3	0	4,443	0	0	0	0	4,446	
임 업 연 구	9,760	13	1,672	0	0	0	149	11,594	
조 림 및 육 림 *	4,743	10	825	0	0	0	0	5,578	
산 림 보 호 *	1,356	14	1,649	0	0	0	0	3,019	
국 유 림 경 영	10,230	56	3,944	0	0	0	337	14,567	
임 도 시 설 *	174	175	5,281	0	0	0	0	5,630	
국 유 재 산 관 리	1,939	18	7,315	0	0	0	0	9,272	
법 정 부 담 금	0	440	0	0	0	0	0	440	
예 비 비	0	0	0	0	0	0	69	69	
산 림 개 발	0	0	0	4,500	0	0	0	4,500	
합 계	40,482	12,785	59,049	4,500	0	277	740	117,833	

\* 특별회계임.

부표 4 농촌진흥청 예산의 세항별·목별 분류

단위: 백만원

	1980								합 계
	인건비 및 물건비	경 상 이 전	자 본 지 출	융자 및 출 자	보 재 전 원	정부내부 지 출	기 타		
기 관 운 영	1,178	27	50	0	0	0	0	0	1,255
농 촌 지 도	1,076	1,306	502	0	0	0	0	0	2,884
농업기술연구	1,157	22	124	0	0	0	0	0	1,303
가축위생연구	528	3	70	0	0	0	0	0	601
농기계화연구	353	6	138	0	0	0	0	0	497
맥 류 연 구	355	0	23	0	0	0	0	0	378
작 물 시 험	1,533	137	223	0	0	2	0	0	1,895
원 예 시 험	683	20	331	0	0	0	0	0	1,034
잠 업 시 험	305	17	19	0	0	0	0	0	341
축 산 시 험	736	101	124	0	0	0	0	0	961
고령지시험	395	3	31	0	0	0	0	0	429
제 주 시 험	236	1	45	0	0	0	0	0	282
시험연구지원	652	4	44	0	0	48	0	0	748
농업경영	60	14	2	0	0	0	0	0	76
합 계	9,247	1,661	1,726	0	0	50	0	0	12,684

부표 4 농촌진흥청 예산의 세항별·목별 분류(계속)

	1981								합 계
	인건비 및 물건비	경 상 이 전	자 본 출	융자 및 출 자	보 재 전 원	정부내부 지 출	기 타		
기 관 운 영	1,777	16	60	0	0	0	0	0	1,853
농 촌 지 도	1,199	1,321	578	0	0	13	0	0	3,111
농업기술연구	1,611	4	92	0	0	0	0	0	1,707
가축위생연구	643	0	40	0	0	0	0	0	683
농기계화연구	308	2	81	0	0	0	0	0	391
맥 류 연 구	429	0	16	0	0	0	0	0	445
작 물 시 험	1,924	147	437	0	0	0	0	0	2,508
원 예 시 험	907	19	219	0	0	0	0	0	1,145
잠 업 시 험	385	11	2	0	0	0	0	0	398
축 산 시 험	909	111	105	0	0	0	0	0	1,125
고령지시험	469	0	38	0	0	0	0	0	507
제 주 시 험	299	0	32	0	0	0	0	0	331
시험연구지원	839	4	245	0	0	60	0	0	1,148
농업경영	60	20	0	0	0	0	6	0	86
합 계	11,759	1,655	1,945	0	0	73	6	0	15,438

	1982							
	인건비 및 물건비	경상 이전	자본 지출	용자 및 출자	보 재 전 원	정부내부 지 출	기타	합계
기관운영	2,298	0	60	0	0	0	0	2,358
농촌지도	1,317	1,394	1,777	0	0	25	0	4,513
농업기술연구	1,857	4	102	0	0	0	0	1,963
가축위생연구	816	0	133	0	0	0	0	949
농기계화연구	394	5	49	0	0	0	0	448
맥류연구	561	0	41	0	0	0	0	602
작물시험	2,586	119	765	0	0	0	0	3,470
원예시험	1,191	25	168	0	0	0	0	1,384
잠업시험	511	11	130	0	0	0	0	652
축산시험	1,389	3	162	0	0	0	0	1,554
고령지시험	657	0	310	0	0	0	0	967
제주시험	423	0	41	0	0	0	0	464
시험연구지원	1,169	7	1,086	0	0	75	0	2,337
농업경영	82	27	0	0	0	0	7	116
합계	15,251	1,595	4,824	0	0	100	7	21,777

부표 4 농촌진흥청 예산의 세항별·목별 분류(계속)

	1983								합 계
	인건비 및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 출	융자 및 출자	보전원	정부내부지 출	기타		
기관운영	2,201	0	28	0	0	0	95	2,324	
농촌지도	1,218	1,196	1,522	0	0	29	49	4,014	
농업기술연구	2,214	4	79	0	0	0	29	2,236	
가축위생연구	895	0	52	0	0	0	16	963	
농기계화연구	433	3	9	0	0	0	10	455	
맥류연구	618	0	25	0	0	0	9	652	
작물시험	3,282	42	476	0	0	0	50	3,850	
원예시험	1,354	22	140	0	0	0	19	1,535	
잠엽시험	555	11	57	0	0	0	11	634	
축산시험	1,477	2	129	0	0	0	20	1,628	
고령지시험	675	0	596	0	0	0	11	1,282	
제주시험	436	0	47	0	0	0	11	494	
시험연구지원	1,158	69	1,527	0	0	77	13	2,844	
농업경영	83	27	1	0	0	0	7	118	
농약연구	425	0	352	0	0	0	10	787	
시험및검정	0	0	0	0	0	0	0	0	
합계	16,934	1,376	5,040	0	0	106	360	23,816	

	1984							
	인건비 및 물건비	경상전	자본출	융자 및 출자	보전원	정부내부지	기타	합계
기관운영	2,270	0	50	0	0	0	94	2,414
농촌지도	1,125	1,157	1,365	0	0	109	70	3,826
농업기술연구	2,093	4	237	0	0	0	29	2,363
가축위생연구	894	0	65	0	0	0	16	975
농기계화연구	431	3	193	0	0	0	10	637
맥류연구	616	0	42	0	0	0	9	667
작물시험	3,253	42	559	0	0	0	51	3,905
원예시험	1,364	19	179	0	0	0	19	1,581
잡업시험	547	11	84	0	0	0	11	653
축산시험	1,500	2	116	0	0	0	20	1,638
고령지시험	681	0	172	0	0	0	11	864
제주시험	441	0	51	0	0	0	11	503
시험연구지원	1,422	57	773	0	0	190	15	2,457
농업경영	104	24	52	0	0	0	9	189
농약연구	433	0	234	0	0	0	10	677
시험및검정	187	0	0	0	0	0	0	187
합계	17,361	1,319	4,172	0	0	299	385	23,536

부표 4 농촌진흥청 예산의 세항별·목별 분류(계속)

	1985							
	인건비 및 물건비	경상전	자본출	용자 및 출자	보 재 전 원	정부내부 지 출	기타	합계
기관운영	2,548	0	52	0	0	0	103	2,703
농촌지도	1,142	1,165	1,812	0	0	161	72	4,352
농업기술연구	2,213	4	227	0	0	0	30	2,474
가축위생연구	1,020	0	94	0	0	0	16	1,130
농기계화연구	467	3	130	0	0	0	10	610
맥류연구	645	0	23	0	0	0	10	678
작물시험	3,425	42	678	0	0	0	53	4,198
원예시험	1,498	22	326	0	0	0	23	1,869
잠엽시험	597	11	139	0	0	0	12	759
축산시험	1,825	2	223	0	0	0	22	2,072
고령지시험	739	0	99	0	0	0	12	850
제주시험	487	0	65	0	0	0	13	565
시험연구지원	1,411	64	1,352	0	0	267	17	3,111
농업경영	132	32	8	0	0	0	9	181
농약연구	478	0	182	0	0	0	8	668
시험및검정	185	3	0	0	0	0	0	188
열대농업연구	214	0	175	0	0	0	11	400
합계	19,026	1,348	5,585	0	0	428	421	26,808

	1986							
	인건비 및 물건비	경 이 상 전	자 본 지 출	융자 및 출 자	보 재 전 원	정부내부 지 출	기 타	합 계
기 관 운 영	2,778	0	64	0	0	0	111	2,953
농 촌 지 도	1,202	1,248	1,777	0	0	220	83	4,530
농업기술연구	2,441	3	187	0	0	0	34	2,665
가축위생연구	1,127	25	512	0	0	0	16	1,680
농기계화연구	504	3	129	0	0	0	11	647
맥 류 연 구	688	0	23	0	0	0	10	721
작 물 시 험	3,750	46	576	0	0	0	66	4,438
원 예 시 험	1,692	22	313	0	0	0	27	2,054
잠 업 시 험	668	12	136	0	0	0	12	828
축 산 시 험	1,903	2	381	0	0	0	23	2,309
고령지시험	809	0	157	0	0	0	13	979
제 주 시 험	553	0	70	0	0	0	14	637
시험연구지원	1,764	88	1,943	0	0	483	20	4,298
농업경영	156	73	49	0	0	0	12	290
농약연구	537	0	138	0	0	0	9	684
시험 및 검정	178	9	0	0	0	0	0	187
열대농업연구	237	0	67	0	0	0	13	317
합 계	20,987	1,531	6,522	0	0	703	474	30,217

부표 4 농촌진흥청 예산의 세항별·목별 분류(계속)

	1987							
	인건비 및 물건비	경상 이전	자본 지출	융자 및 출자	보 재 전 원	정부내부 지 출	기타	합계
기관운영	2,978	0	628	0	0	0	126	3,732
농촌지도	1,338	1,271	2,852	0	0	171	86	5,718
농업기술연구	2,713	3	212	0	0	0	36	2,964
가축위생연구	1,216	26	617	0	0	0	17	1,876
농기계화연구	538	3	118	0	0	0	11	670
맥류연구	721	0	86	0	0	0	11	818
작물시험	4,111	49	696	0	0	0	68	4,924
원예시험	1,855	22	383	0	0	0	28	2,288
잠엽시험	713	13	151	0	0	0	13	890
축산시험	2,078	110	376	0	0	0	24	2,588
고령지시험	874	0	171	0	0	0	13	1,058
제주시험	612	0	106	0	0	0	15	733
시험연구지원	1,976	92	1,397	0	0	852	22	4,339
농업경영	265	99	4	0	0	0	12	380
농약연구	607	0	114	0	0	0	10	731
시험및검정	217	8	0	0	0	0	0	225
열대농업연구	226	0	27	0	0	0	14	267
합계	23,038	1,696	7,938	0	0	1,023	506	34,201

	1988							
	인전비 및 물전비	경상 이전	자본 지출	융자 및 출자	보 재 원	정부내부 지 출	기 타	합 계
기관운영	3,654	0	538	0	0	0	134	4,326
농촌지도	1,540	1,297	3,087	0	0	213	93	6,230
농업기술연구	3,090	3	254	0	0	0	42	3,389
가축위생연구	1,443	21	712	0	0	0	22	2,198
농기계화연구	623	3	122	0	0	0	16	764
맥류연구	819	0	82	0	0	0	15	916
작물시험	4,681	51	874	0	0	0	86	5,692
원예시험	2,124	24	371	0	0	0	33	2,552
잠업시험	818	14	224	0	0	0	18	1,074
축산시험	2,380	108	335	0	0	0	30	2,853
고령지시험	969	0	205	0	0	0	18	1,192
제주시험	699	0	127	0	0	0	19	845
시험연구지원	2,210	54	860	0	0	953	23	4,100
농업경영	339	118	30	0	0	0	13	500
농약연구	710	0	114	0	0	0	14	838
시험및검정	280	8	1	0	0	0	0	289
열대농업연구	235	0	1	0	0	0	15	251
합계	26,614	1,701	7,937	0	0	1,166	591	38,009

부표 4 농촌진흥청 예산의 세항별·목별 분류(계속)

	1989							
	인건비 및 물건비	경 이 상 전	자 본 지 출	용자 및 출 자	보 재 전 원	정부내부 지 출	기 타	합 계
기 관 운 영	4,470	0	565	0	0	0	141	5,176
농 촌 지 도	1,827	1,253	3,107	0	0	289	96	6,572
농업기술연구	3,793	3	329	0	0	0	43	4,172
가축위생연구	1,641	0	788	0	0	0	23	2,452
농기계화연구	722	3	124	0	0	0	16	865
맥 류 연 구	956	0	68	0	0	0	16	1,040
작 물 시 험	814	0	138	0	0	0	14	966
원 예 시 험	5,401	2	1,355	0	0	0	88	6,846
잠 업 시 험	2,497	28	419	0	0	0	35	2,979
축 산 시 험	956	0	246	0	0	0	19	1,221
고령지시험	2,614	116	560	0	0	0	31	3,321
제 주 시 험	1,095	0	296	0	0	0	18	1,409
시험연구지원	817	0	84	0	0	0	20	921
농업경영	2,247	80	854	0	0	936	24	4,141
농약연구	337	16	47	0	0	0	13	413
시험 및 검정	307	5	2	0	0	0	0	314
열대농업연구	196	0	3	0	0	0	15	214
합 계	30,694	1,506	8,985	0	0	1,225	612	43,022

	1990							
	인건비 및 물건비	경상 이전	자본 지출	융자 및 출자	보 재 원	정부내부 지 출	기타	합계
기관운영	5,365	0	401	0	0	0	154	5,920
농촌지도	2,387	2,063	3,158	0	0	200	101	7,909
농업기술연구	4,359	3	520	0	0	0	46	4,928
가축위생연구	1,943	21	670	0	0	0	24	2,658
농기계화연구	847	3	146	0	0	0	18	1,014
맥류연구	1,097	0	76	0	0	0	16	1,189
작물시험	951	0	156	0	0	0	15	1,122
원예시험	6,222	2	1,013	0	0	0	96	7,333
잠업시험	2,914	29	573	0	0	0	38	3,554
축산시험	1,146	0	278	0	0	0	20	1,444
고령지시험	3,055	120	858	0	0	0	34	4,067
제주시험	1,209	0	231	0	0	0	20	1,460
시험연구지원	926	0	144	0	0	0	21	1,091
농업경영	1,860	867	1,141	0	0	804	25	4,697
농약연구	507	16	26	0	0	0	13	562
시험및검정	346	5	0	0	0	0	0	351
열대농업연구	203	0	26	0	0	0	15	244
합계	35,337	3,129	9,417	0	0	1,004	656	49,543

## 참 고 문 헌

- 경제기획원, 「예산개요」, 1980~90.
- 농림수산부, 「예산내역서」, 1980~90.
- , 농업공무원교육원, “UR 이후 한국농정의 대응방향,” 1990. 농  
림수산 정책개발 세미나 주제발표 논문, 1990.
- 농촌진흥청, 「예산내역서」, 1980~90.
- 산림청, 「예산내역서」, 1980~90.
- 수산청, 「예산내역서」, 1980~90.
- 이재옥 외,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 협상의 추이와 전망」, UR 농산물  
협상자료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0.
- 재무부, 「결산개요」, 1980~89.
- , 「재정투융자백서」, 1989.
- 농림수산부, *Negotiating Group on Agriculture Country Lists: The Republic of Korea*, 1990..